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8-37

# 방송평가제도의 변별력 제고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연구

A Study on Enhancement of Effectiveness and  
Public Interest in Broadcaster's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2018.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8-37

# 방송평가제도의 변별력 제고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연구

(A Study on Enhancement of Effectiveness and  
Public Interest in Broadcaster's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성욱제/송민선

2018. 1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 보고서는 201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방송평가제도의 변별력 제고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연구회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2월

2018년

원  
원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

총괄책임자 : 성 옥 제 연구 위

참여연구원 : 송 민 선 연구 원

# 목차

요	약	문
..... vii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1.	연구	필요성
..... 1		
2.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2		
3.	연구	목적
..... 4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5		
1.	연구	구성
..... 5		
2.	연구	방법
..... 5		
제 2	장	현행 방송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주요 논의사항
..... 7		
제 1	절	현행 방송평가 제도 현황
..... 7		
1.	도입배경	및 경과
..... 7		
2.	법적	근거
..... 7		
3.		평가대상
..... 8		

4.					평가방식
.....					
.....	8				
5.			평가결과의		활용
.....					
..	9				
6.		2017년도		방송평가	결과
.....					
					10
제	2	절	문제점과	주요	논의사항
.....					
					15
1.					문제점
.....					
.....	15				
2.			주요		논의사항
.....					
..	22				
제	3	장	평가규칙		개정(안)
.....					
					29
제		1	절		기본방향
.....					
.....	29				

제	2	절	개선방안
..... 30			
1.	매체 특성 반영 확대 및	평가체계 객관성 확보	
..... 30			
2.	평가기준 및	방법의 합리적	개선
..... 45			
3.	환경변화 적극	대응-평가항목	신설
..... 50			
제	3	절	행정예고(안) 의견 검토
..... 52			
제	4	장	세부기준 개정(안)
..... 62			
제	1	절	세부기준 개정(안)
..... 62			
제	2	절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 검토
..... 70			
제	5	장	결
..... 81			
제	1	절	정책적 제안
81			
제	2	절	기대효과 및 한계
..... 84			
참	고	문	헌
..... 85			
[부록	1]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86			
[부록	2]	방송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속기록
..... 122			





# 표목차

<표 1-1>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연혁	1
<표 2-1>	2017년도 평가(2018년 실시) 대상사업자	8
<표 2-2>	평가항목 간 변별력 차이	22
<표 2-3>	지상파 사업자 방송평가 결과(2015년도-2016년도 상반기)	23
<표 2-4>	종합편성PP 사업자 방송평가 결과(2015년도-2016년도 상반기)	23
<표 2-5>	사업자군별 평가항목 수와 배점	25
<표 2-6>	현행 방송평가 항목 및 배점	25
<표 2-7>	현행 총점에서 감점항목이 차지하는 비중	27
<표 3-1>	사업자群별 총점(현행 vs 조정)	31
<표 3-2>	사업자群별 총점 내 내용/편성, 운영의 비중	31
<표 3-3>	평가항목의 우선순위-지상파TV(중앙)	33
<표 3-4>	평가항목의 우선순위-종합PP	34
<표 3-5>	평가항목의 우선순위-지역 지상파TV	35
<표 3-6>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보도PP	36
<표 3-7>	평가항목의 우선순위-홈쇼핑PP	37
<표 3-8>	평가항목의 우선순위-SO/위성	38
<표 3-9>	평가항목의 우선순위-지상파R	39

<표	3-10>	평가항목의	우선순위-지상파DMB
.....		.....	40
<표	3-11>	평가항목의	배점조정-지상파TV
.....		.....	41
<표	3-12>	평가항목의	배점조정-종편PP
.....		.....	41
<표	3-13>	평가항목의	배점조정-지상파TV(지역)
.....		.....	42
<표	3-14>	평가항목의	배점조정-보도PP
.....		.....	42
<표	3-15>	평가항목의	배점조정-홈쇼핑PP
.....		.....	43
<표	3-16>	평가항목의	배점조정-SO
.....		.....	43

<표	3-17>	평가항목의	배점조정-위성	
.....				44
<표	3-18>	평가항목의	배점조정-지상파R	
.....				44
<표	3-19>	평가항목의	배점조정-지상파DMB	
.....				45
<표	3-20>	주요 변경항목의	현행·행정예고안·수정안	비교
.....				61
<표	4-1>	공정성 관련 자율 규제 제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점수표		
.....				62
<표	4-2>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배점방식	
.....				64
<표	4-3>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배점방식
.....				65
<표	4-4>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방식	
.....				66
<표	4-5>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평가	기준
.....				66
<표	4-6>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실적	평가	배점방식
.....				67
<표	4-7>	외주제작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평가	기준
.....				67
<표	4-8>	상생협의체 제도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점수	기준	
.....				68
<표	4-9>	공공, 공익, 복지, 지역 채널의 수에 따른 평가		
.....				68
<표	4-10>	전체 채널 수 대비 공공, 공익, 복지, 지역 채널의 수에		
	대한	비율	평가	
.....				69



# 요약문

## 1. 제 목

- 방송평가제도의 변별력 제고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연구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그동안의 지속적인 평가 규칙 개정을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평가의 실효성,

합리성 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매체별 특성 반영, 평가의 실효성, 평가기준의 합리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변화된 방송환경 하에서 현행 방송평가의 영역·항목·배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함으로써, 전반적인 방송평가의 실효성, 합리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제1장은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체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그리고 연구 방법을,

제2장은 현행 방송평가 제도의 현황, 문제점, 주요 논의사항을, 제3장은 방송평가

제도의 개선방향(방송평가 규칙과 세부기준 개정(안))을, 제4장은 결론(정책적 제안,

기대 효과 및 한계)으로 구성되어 있음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1. 매체특성 반영 확대 및 평가체계 객관성 확보

- 법령 위반 등 감점항목의 배점방식 개선
  - 법령 위반 등 기본점수(배점) 부여 후 위반 건당 감점으로 평가되는 항목의 경우,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이를 총점에서 직접 감점
- 사업자군(群)별 총점, 영역/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 감점제도 개선에 따라 사업자군별 평가항목 수, 기존 총점 차이, 평가항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점을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우선순위의 재설정  
에 따라 영역별 및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 2. 평가기준 및 방법의 합리적 개선

- 재난방송 평가방식 개선
  - 사업자별 편성실적 차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群)을 설정하고, 현행 5등급 평가를 9등급으로 세분화
- 장애인 고용 평가방식 개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는 2배 가산 하여 장애인 고용비율 산정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을 평가하는 기준을 법령에 따라 현행 2.5%보다 상향 조정('19년 이후 3.1%)
- 방송기술 투자 평가방식 개선
  - 모든 사업자에게 평가적용이 곤란한 세부 평가척도인 '방송기술 관련 투자액

대비 인증제품 투자비 비율' 항목 삭제



-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방식 개선
  - 보도분야는 현행 평가기준 적용 시 사업자별 평가점수의 편차가 없어,
    - 평가 항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시청시간대 보도분야 편성비율 축소(42% →40%)
- 외주제작시장 표준계약서 적용대상 명확화
  - 공정거래 질서 확립 관련 평가항목의 세부 평가척도인 '표준계약서 활용의 적정성'의 기존 적용대상 사업자(지상파TV 3사, 종편PP)에 'EBS'를 추가 포함하여
    - 평가
- 관계법령 준수 평가의 제재조치 대상기관 확대
  -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의 경우,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재조치를 추가 포함하여 평가

### 3. 환경변화 적극 대응

- 지상파 · 종편PP, 외주제작시장의 상생협력 강화 평가 신설
  -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에 대한 안전 강화 및 방송사 · 외주제작사와 독립창작자
    - 간 상생 강화를 위해, '상해 · 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와 '상생협의회체 운영' 등을 기존 평가항목에 통합 · 반영
- 지상파,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신설
  - UHD 프로그램 본방송이 시작됨에 따라('17. 5월 지상파TV) 방송매체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UHD 프로그램 관련 편성 평가항목을 신설
- 보도PP,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 신설
  - 방송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위해 보도PP에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항목 신설
- SO · 위성, 재난방송 편성 평가 신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 의무편성사업자인 SO와 위성에 대한

재난방송 편성 평가항목 신설

- 홈쇼핑PP,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 신설
  - 개정된 방송법('17. 3. 14.)에 따라 시청자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홈쇼핑PP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항목 신설

#### 5. 정책적 활용 내용 및 기대효과

- 현행 방송 평가제도 기준의 실효성/타당성 검증 및 개선안 제시
- 개정 규칙에 따른 평가척도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규제 합리성 확보
-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방송평가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 제고
- 방송평가 결과를 통한 각 사업자들의 방송프로그램 품질 개선 유도



# SUMMARY

## 1. Title

◦ A Study on Enhancement of Effectiveness and Public Interest in Broadcaster's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 This research has a goal to review Broadcaster's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rapid change of media landscape. It also has a goal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 3. Research Results

◦ This research contains the problem and major issues of the current broadcaster's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e improvement plan of the system.

## 4.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 Expectations

◦ Purpose of this research is revising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and improving

public responsibility of broadcasting business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Research Questions

Chapter 3. Research Results 1 – revision of regulation

Chapter 4. Research Results 2 – revision of manual

Chapter 5. Conclusion

# 제1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연구 필요성

○ 그동안의 지속적인 평가 규칙 개정을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평가의 실효성, 합리성

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 지속적으로 제기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01. 8. 13) 이후 주요 개정은 총 7차례

\* 평가항목의 매체별 특성 반영 부족, 사업자간 평가점수 차이 크지 않음, 평가

항목과 배점의 자의적 배분 등

<표 1-1>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연혁

구분	시기	주요 내용
제2차 개정	05. 12. 9	○ KI수용자평가조사 도입
		○ 운영영역 평가 도입
제3차 개정	07. 12. 28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평가항목 및 척도 신설
		○ '방송심의의 관련 제규정 준수'항목의 평가척도 개정
제4차 개정	10. 12. 30	○ (주의, 경과조치) 램 유통 공정거래, 개인정보 보호 신설
		○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편성 시청자기연령 종합평가 신설
제5차 개정	11. 12. 30	○ 협력업체 만족도 조사 신설
		○ 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 기준 마련
제6차 개정	13. 12. 30	○ 평가 중 인증제품 투자 평가 신설
		○ 평가 신설
제7차 개정	11. 12. 30	○ 방송심의규정 준수 항목의 감점적용 사항 평가척도 변경
		○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방식 변경(07시~22시)



구분	시기	주요 내용
제6차 개정	13.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방송편성 평가 변경(고시 준수)</li> <li>○ 방송법 및 공정거래법 준수여부 평가 배점 조정</li> <li>○ 방송심의 및 편성 등 법령 위반 감점 강화</li> <li>○ 언중위 결정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평가항목 신설</li> <li>○ 주시청시간대 편성평가 대상 확대(지상파TV→중편PP 확대)</li> </ul>
제7차 개정	16. 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신설(방송3사 및 종합편성PP 대상)</li> <li>○ 채널방송 평가 배점 확대(지상파TV 60점→80점)</li> <li>○ 편성평가 항목 신설 등</li> </ul>
○ 변화된 방송환경 하에서 전반적인 점검함으로써, - 방송사업자의	현행	영역·항목·배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리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반영되는 방송평가제도는 피평가자인

방송 사업자가 위험적 소지를 근거로 폐지의 주장을 펼칠 정도로 논쟁적인

사안으로, 평가제도의 원칙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에 따른 수단이 합리적

으로 선택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평가대상, 평가영역(내용, 편성, 운영), 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세부기준)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가. 기존 연구

○ 방송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방송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수행되어 왔으며,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방송평가 규칙 개정으로 이어져 왔음

- 제2차 개정을 앞두고 수행되었던 강남준(2004)의 연구는 3년간의 방송평가 점수에

대한 시계열분석 결과, 측정 척도의 관점에서 유용성과 신뢰도, 타당도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변별력 없는 평가 항목이 많고,

항목별 점수부여 체제에 대한 일관성과 논리가 부족하다고 주장

- 제4차 개정을 앞두고 수행되었던 권호영/하주용(2010)의 연구는 평가항목 및

제출자료 간소화를 통한 규제 완화를 위해 평가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하고, 유사 평가항목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실제로, 제4차

개정을 통해, 내용, 편성, 운영 영역의 총 31개의 평가항목이 11개로 대폭 축소

되었고, 세부 평가척도도 69개에서 34개로 감소된 바 있음

- 제6차 개정을 앞두고 수행되었던 성욱제(2012)의 연구 역시, 시청자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 시청자위원회 만족도 조사 등을 제안한 바 있음

- 가장 최근 이루어진 제7차 개정을 앞두고 수행되었던 성욱제(2015)의 연구 역시,

막말, 오보 등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평가규칙 개정을

제안한 바 있음

○ 방송사업자 입장에서 방송평가제도에 대해 개선점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었음

- 주영호(2005)는 방송평가제도가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측정척도가 자의적이며, 평가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방송협회(2007)는 방송평가제도가 '방송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률이 아니라 방송위원회

규칙에 의해 박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회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제3항 제1호 '방송평가'를 삭제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해소할

것을 주장했으며, 방송법상 '방송프로그램의 운영'이 아닌 '방송사의 운영'(경영)

으로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음



## 나. 본 연구의 차별성

○ 본 연구는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고, 변별력 있는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최대한 객관

적인 세부기준을 수립해 방송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들과 연구목적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유사할 수 있음

- 다만, 2012년 이전의 연구들의 경우 방송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지 않은

학계에서 수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2012년, 2015년과 마찬가지로,

방송 평가를 실질적으로 담당해온 평가지원단이 직접 참여해서 연구를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구체성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됨

## 3. 연구 목적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높은 방송평가 제도를 구축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체 특성 반영 강화,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기준의 합리화, 환경변화 적극 대응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 (매체 특성 반영 강화) 지상파방송 평가를 기본 틀로 하면서 매체특성에 맞지 않는

항목을 배제하는 구조여서 항목과 배점에 있어 덜 반영되어 있는 매체군의 특성을

보다 반영

- (평가의 실효성 제고) 변별력이 낮거나 기본점수화 되어 있는 항목의 배점을 조정

하는 등 평가의 전반적인 변별력 제고

- (평가기준의 합리화) 평가기준이 미비하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의 수정 또는

보완을 통해 평가기준의 합리화 달성

- (환경변화 적극 대응) 외주인력 및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 UHD 방송 도입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의 신설

##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1. 연구 구성

○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네 개의 부분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됨

-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평가항목의 개정 이유를

다루며, 본 연구의 목적과 전체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그리고 연구방법 등을 기술함

- 제2장은 현행 방송평가 제도의 문제점 및 주요 이슈를 다룸. 구체적으로는 현행

방송평가 제도 현황, 현행 방송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기술함

- 제3장과 제4장은 연구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현행 방송평가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3장은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을 다루고 있음.

이를 위해, 기본방향, 구체적인 개정(안), 그리고 개정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자 함. 제4장은 규칙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음.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사업자 의견을 함께 다루고 있음

- 제5장은 결론(정책적 제안, 기대 효과 및 한계)을 제안하고 있음

### 2. 연구 방법

○ 방송평가 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방송평가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을 실시

- 자문단 구성은 방송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현직 방송평가위원회

현 방송평가지원단, 총 7인\*으로 구성

\* 주정민(전남대 신방과), 지성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예란(광운대 미디어

영상학부), 하주용(인하대 언론정보학과), 노진백(삼일회계법인), 송종현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성욱제(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은 2018년 8월30일 프레스센터 18층에서 '방송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통해 이루어졌음

\* 토론자는 이정환(KBS), 임석봉(JTBC), 채호석(GS shop), 임성원(CJ헬로), 김세욱(민언련),

하주용(인하대), 지성우(성균관대), 오광혁(방통위) 총 8명이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속기록 참조



# 제 2 장 현행 방송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주요 논의 사항

## 제 1 절 현행 방송평가 제도 현황

### 1. 도입배경 및 경과

○ 방송평가 제도는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방송의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00년

방송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 '01년부터 지상파방송에 대한 평가를 개시, '03년부터는

모든 허가 및 승인대상 방송사업자로 확대

### 2. 법적 근거

○ 방송법 제31조 및 제17조제3항,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방통위규칙 제47호)

#### ◆ 방송법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

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

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등)

####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따른 방송평가

1. 제31조제1항에



### 3.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승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같이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거쳐서 방송사업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함

<표 2 - 1> 2017년도 평가(2018년 실시) 대상사업자

연도	매체	지상파		SO 위성				PP				합계	
		R	DMB	중편	보도	홈쇼	평						
2016년	개 사	45개+3개(DMB전용)		90	1	4	2	8	153				
(15년도 평가)	개 국	44개+3개(64개, R 64개, R 163개, DMB 19개)		90	1	4	2	2	12	156개 사 (35)			
2017년	사	45개+3개(DMB전용)							12	157개			
(16년도 평가)	국	R의 경우		90	1	4	2		(17)	(361개)			
2018년		KNN 제2FM(' 16. 5월 개국),							16.				
(17년도 평가)	TV 증가												

※ 2017년도 평가(2018년

- 충주MBC와 감소, 지상파 2개국(채널)

### 4. 평가방식

○ (평가영역) 방송법 제31조제1항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

- (내용영역) 프로그램 우수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오보 방지 노력, 시청자

권익 보호 노력 등을 평가

- (편성영역)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사회기여 프로그램 편성(어린이·장애인

시청지원·재난방송·비상업적 공익광고) 등을 평가

- (운영영역) 재무건전성과 경영투명성, 방송발전을 위한 노력, 방송사 운영 관련 제규정

준수, 매체 특성에 따른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

○ (평가배점) 지상파TV(900점), 지상파R·DMB(500점), 종편PP(700점), 보도·홈쇼핑PP

(500점), SO·위성(500점) 등

○ (평가절차) 방송사업자 제출자료를 방송평가지원단에서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공표

방송평가지원단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통신위원
<p>회</p> <p>제출자료 조사 및 검토 실시</p> <p>(필요시 사업자 의견청취)</p> <p>'18. 7.~9.</p>	<p>방송평가 결과 심의·평가</p> <p>(필요시 사업자 의견청취)</p> <p>'18. 10.~11.</p>	<p>방송평가 결</p> <p>의결·공표</p> <p>'18. 12.</p>
<p>반영) 방송평가 시 일정비율 반영하며,</p>	<p>제17조제3항제1호에 재허가 및 재승인</p>	<p>재허가·부처에서</p>

### 5. 평가결과의 활용

○ (재허가·재승인 결과는 방송법 따라

재승인 심사 반영비율은 담당

결정

※ (방송평가 결과 반영 비율) 지상파와 종편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총 점수 중 40%

반영 등





## 6. 2017년도\* 방송평가 결과

\* 2017년도 방송실적분에 대한 2018년 방송평가

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 1) 지상파TV

○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총점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평가점수는 KBS1, SBS, KBS2,

MBC 순(順)으로 전년도 평가 순위와 차이가 있음

※ 2016년도 결과: KBS1, MBC, SBS, KBS2 순

○ (KBS1) 전년 대비 총점 23점 하락 [’16년도 796.12점 → ’17년도 772.99점]

※ 심의규정 준수, 관계법령 준수 등의 평가항목에서 감점되어 총점 하락

○ (SBS) 전년 대비 총점 62점 하락 [’16년도 763.79점 → ’17년도 702.20점]

※ 심의규정 준수, 편성규정 준수 등의 평가항목이 주된 총점 하락 요인

○ (KBS2) 전년 대비 총점 46점 하락 [’16년도 740.01점 → ’17년도 693.70점]

※ 심의규정 준수, 편성규정 준수 등의 평가항목에서 감점의 폭이 큼

○ (MBC) 전년 대비 총점 108점 하락 [’16년도 771.24점 → ’17년도 662.99점]

※ 프로그램 수상실적, 심의규정 준수, 편성규정 준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등의

평가항목에서 큰 폭의 감점으로 인해 총점 하락

○ (EBS) 전년 대비 총점 13점 하락 [’16년도 825.22점 → ’17년도 812.23점]

※ 심의규정 준수 등의 평가항목에서 감점 확대



## 2) 지역민방 TV

- SBS의 평가 점수 하락으로 대부분의 지역민방 평가점수 하락

- TBC(799.75점), G1(776.02점), JTV(766.92점), UBC(762.78점), JIBS(758.87점), CJB

(758.32점), OBS(756.98점), KBC(754.47점), TJB(748.86점), KNN(733.49점) 순으로

전년 대비 평가순위 차이가 큼

※ 2016년도 결과: KBC(786.23점), JTV(781.06점), TBC(777.45점), OBS(777.08점), UBC

(774.83점), JIBS(771.04점), KNN(768.93점), CJB(758.74점), TJB(754.16점), G1

(750.32점) 順

- (총점 상승) TBC, G1은 전년대비 상승

※ TBC: 재난방송 편성,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등의 평가항목에서 점수 증가

G1: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재무건전성 등의 평가항목에서 점수 증가

- (총점 하락) KNN, OBS, KBC는 전년대비 크게 하락

※ KNN: 심의규정 준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등의 평가항목에서 감점

OBS: 자체심의, 프로그램 수상실적 등의 평가항목에서 감점

KBC: 심의규정 준수, 자체심의 등의 평가항목에서 감점

## 3) 지상파 라디오

○ (AM) KBS1(420.80점), SBS(415.93점), MBC(411.75점), KBS2(399.60점) 순이며,

(FM) SBS(415.93점), KBS2(414.20점), MBC(404.25점), KBS1(383.40점) 순으로 평가

결과가 나타남

※ 2016년도 결과: [AM] KBS1(434.47점), MBC(421.81점), SBS(412.27점), KBS2(397.88점),

[FM] SBS(432.57점), MBC(422.30점), KBS2(400.45점), KBS1(387.22점) 順

- AM과 FM 모두 1위 사업자 변동 없음

※ KBS제1라디오는 프로그램 수상실적, 재난방송 편성 등에서, MBC(AM)

는 재난방송

편성, 관계법령 준수 등의 평가항목에서 점수 하락

#### 4) 지상파 DMB TV

○ 지상파 계열은 KBS(408.14점), SBS(389.26점), MBC(383.62점) 순이며, 비지상파

계열은 유원미디어(444.09점), 한국DMB(435.60점), YTN(414.72점) 순으로, 전년 대비

평가순위와 차이가 있음

※ 2016년도 결과: 지상파 계열 MBC(417.21점), KBS(415.74점), SBS(410.57점), 비지상파

계열 한국DMB(428.88점), 유원미디어(419.66점), YTN(416.32점) 順

- 비지상파 계열 유원미디어, 한국DMB는 재무건전성 평가점수 상승

#### 나. 비지상파 방송사업자

##### 1) 종편 PP

○ JTBC의 평가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평가점수는 TV조선, MBN, 채널A,

JTBC의 순으로 전년도 평가 순위와 차이가 있음

※ 2016년도 결과: JTBC, TV조선, MBN, 채널A 順

- (TV조선) 전년 대비 총점 16점 상승 ['16년도 586.00점 → '17년도 602.07점]

※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재난방송 편성, 장애인/여성 고용 등의 평가항목에서

점수 증가로 총점 상승

- (MBN) 전년 대비 총점 11점 상승 ['16년도 583.72점 → '17년도 594.50점]

※ 재난방송 편성,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의 평가항목에서 점수 증가

- (채널A) 전년 대비 총점 23점 상승 ['16년도 570.47점 → '17년도 593.46점]

※ 심의규정 준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항목 등에서 점수

증가

- (JTBC) 전년 대비 총점 21점 하락 ['16년도 597.57점 → '17년도

576.22점]

※ 협찬고지 및 가상광고 등의 위반 건수 증가로 인해 심의규정 준수, 편성 규정 준수, 관계법령 준수 등의 평가항목에서 감점의 폭이 확대되어 총점 하락

## 2) 보도 PP

- YTN, 연합뉴스TV의 순위이나, 평가점수의 차이는 크지 않음

※ 2016년도 결과: 연합뉴스TV, YTN 順

- (YTN) 전년 대비 총점 4점 하락 ['16년도 426.87점 → '17년도 423.17점]

※ 자체심의, 재무건전성 등의 평가항목에서 감점

- (연합뉴스TV) 전년 대비 총점 6점 하락 ['16년도 426.88점 → '17년도 421.03점]

※ 재무건전성, 관계법령 준수, 장애인/여성 고용 등의 항목에서 감점

## 3) 위성방송/MSO

- CJ헬로(23개), 현대HCN(8개), 티브로드(22개), CMB(10개), 딜라이브(17개) 순이며,

딜라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MSO(평균)의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큰 차이는 없음

※ 2016년도 결과: CJ헬로, 티브로드, 현대HCN, CMB, 딜라이브 順

○ KT스카이라이프는 전년대비 총점 26점 상승 ['16년도 399.86점 → '17년도 426.12점]

※ 관계법령 준수, 공정거래질서 확립 노력 등의 평가항목에서 점수 증가

## 4) 홈쇼핑PP

-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GS SHOP, 홈앤쇼핑, 아임쇼핑, CJ오쇼핑

순이며, CJ오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 간 평가점수는 큰 차이가 없음

※ 2016년도 결과: GS SHOP,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順

- (현대홈쇼핑) 전년 대비 총점 8점 상승 ['16년도 440.52점 → '17년도 448.79점]

※ 관계법령 준수 등의 평가항목에서 점수 증가

- (NS홈쇼핑) 전년 대비 총점 18점 상승 ['16년도 427.63점 → '17년도 445.51점]

※ 소비자원 민원, 관계법령 준수 등의 평가항목에서 점수 증가



- (GS Shop) 전년 대비 총점 6점 하락 ['16년도 447.41점 → '17년도 441.82점]

※ 심의규정 준수, 기술콘텐츠 투자 등의 평가항목에서 점수 하락

- (홈앤쇼핑) 전년 대비 총점 31점 상승 ['16년도 409.72점 → '17년도 440.75점]

※ 관계법령 준수, 재무건전성, 소비자원 민원 등의 평가항목에서 큰 폭으로 점수 증가

- (CJ오쇼핑) 전년 대비 총점 9점 하락 ['16년도 430.12점 → '17년도 421.37점]

※ 심의규정 준수, 재무건전성 등의 항목에서 감점 확대



## 제 2 절 문제점과 주요 논의사항

### 1. 문제점

가. 2016년도 방송평가 의결(방통위 전체회의, 2017. 11. 27)<sup>1)</sup> 시 지적된 문제점

○ 방송평가 결과의 변별력 미흡

- 사업자간 방송평가 결과(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 특히,

2016년도 방송평가의 경우, 보도PP간 점수 차이가 0.01점(100점 환산)에 불과한

것이 문제 지적의 계기가 되었음

“제4기 위원회에서는 방송 평가를 좀 더 엄격히 변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승인/재허가가 조금 제대로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이효성 위원장)

“YTN과 연합뉴스TV는 점수 차이가 0.01 차이입니다.(...) 모든 사업자들이 학점으로

말하면 기본B이고 또 절반 이상이 B+입니다.(...) 지금 현재 방송평가 제도가 변별력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고삼석 위원)

○ 가점제도에 의한 감점 평가항목의 도입 취지 훼손

- 형식적인 가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감점 항목의 중요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으로,

기본적인 지적은 가점 제도의 지적이나, 이는 감점항목과 가점항목을 혼용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감점항목의 도입 취지를 보다 더 적절

하게 운용할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음

“이번에 평가해 보면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는데 공정성 관련 자율제도를 구축... 해도

무조건 가점이 되었기 때문에 심의규정을 위반해서 일부 감점이 되더라도 이런 것이

다 가점이 되면 감점된 부분이 자동 해소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표철수 위원)

- 1) 방송통신위원회 제41차 회의- 속기록(2017. 11. 27.(월))

○ 평가항목의 배점(우선순위)의 합리성 미흡

- 평가항목의 배점이 너무 높다거나, 낮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해당 사업자군(群)에 대한 평가항목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어, 방송평가 제도의 존재 이유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편성영역에서 편성규정을 준수한 여부에 대해 배점이 30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점수 배분이 다른 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표철수 위원)

“방송평가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배점 평가

항목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배점 중 하나 보면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던데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순위가 바뀐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지엽적인 것에 의해서 순위가 엇치락 뒤치락

되는 것이 아닌가, 빨리 시급히 이런 평가항목과 배점을 빨리 시정해야한다는 말씀에

의견을 보태겠습니다.”(김석진 위원)

나. '16년 방송평가규칙 개정을 위한 사업자 의견수렴 당시 제기된 문제점<sup>2)</sup>

○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관련

- (지상파TV) 동종 매체간 경쟁을 통해 상대평가를 하기 보다는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합당함. 동일 프로그램의 수상실적을 최고점수인 1회만 인정하면 이미

수상한 우수한 작품의 출품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최고 점수 1회만

인정하는 부분 재고 필요. “위원회가 인정하는 해외 우수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에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시상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개

2) 성육제(2015), 방송매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평가지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제3 장 제

2절 사업자 의견수렴 내용 중 '16년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 위 주로 기술

○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평가 관련

- (지상파TV)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 EBS와 케이블 TV등 어린이 전문 채널 시청

점유율 확대 및 매체 환경변화로 지상파 시청자가 지속적으로 이탈 중인 현실을

반영 지상파 방송사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및 배점 완화 필요. 어린이

프로그램' 및 '어린이 교육 및 정보 제공프로그램'의 인정 기준 완화 필요, 특히

뉴스, 시사보도, 퀴즈쇼 외에 기타 장르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어린이

교육 및 정보 제공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현행 세부 운영기준에 대한 완화 필요

○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관련

- (케이블SO) SO는 의무고시사업자임에도 필수지정사업자인 지상파, 위성, 보도PP,

종편PP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관련

- (지역지상파TV, 지상파TV, 지상파라디오) '재난방송 편성의 적절성' 평가척도 中

'재난방송 편성 실적에 대한 5등급 평가'는 단순히 편성시간을 양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당해 방송구역 내 재난발생 빈도 차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임

- (지역지상파TV) '방송구역 내 재난상황 발생 시 제대로(또는 충분히) 재난방송을

실시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 관련

- (지상파TV) 주시청시간대의 편성 장르를 지상파에 한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부적

제정 당시와 달리 종편 및 케이블 등 다양한 채널과 매체가 경쟁하는 방송 환경

변화에 맞지 않음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평가 항목 관련

- (케이블SO) 광역단위 편성물은 지역성 프로그램으로 불인정되고 있으나 SO는

광역단위 제작이 대부분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성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 기준

재정비 필요



- 방송기술 투자평가 개선 필요
  - (지상파라디오) TTA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 및 방송장비규격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제품 목록은 현재(15. 4월) 총 57개 항목으로 거의 TV 채널의 장비로

지상파라디오에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고 독립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의 평가

접수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TV사업자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 (지상파라디오, 보도PP) 방송프로그램을 100% 자체제작하며, 프로그램의 판매

또는 구매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적용 0점 처리 하는 것은 불공평

하므로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총점 모델에 따른 종합적 평가의 문제점

- (지상파TV) 현행 총점 방식은 영역별 부문별로 잘못이 드러나지 않아 개별

사업자들이 어떤 영역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음. 재허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사업자별 획득점수를 산출

할 때도 영역별 점수의 표준화 과정이 필요

- 평가 항목 간 중복

- (지상파TV) 불필요한 항목은 과감하게 삭제하여 항목을 축소하는 방안 강구 필요

다. '13년 방송평가규칙 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당시 제기된 문제점<sup>3)</sup>

- 평가항목과 배점에 대한 타당성 논란

- (평가항목) 매체별로 평가항목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 존재.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배점) 평가항목 간 배점 부여의 근거가 미약. 각 평가항목별 배점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3) 성육제(2012), 방송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방송통신  
위원  
회, 제3장 제2절 방송평가제도의 문제점 중 '13년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 중심으로 기술

□ 지상파 방송사업자(TV/R)

-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 방송사 규모 및 방송권역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음. 중앙방송과 지역방송 간의 차이 그리고 지상파 채널과 종합편성PP 간의

차이도 고려해야할 것. 단순 수중계 프로그램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

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필요

- (자체심의 운영 평가) 지상파R의 경우, 심의제재에 대한 사전 지적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이런 경우 항목을 없애기보다는 자체심의 운영평가 점수를 최소화

하여 운영여부 정도만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단순화할 필요

- (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여부 평가) 지상파TV 내용영역에서 사업자간 변별력이

가장 높은 항목이지만, 지상파R의 경우, 심의규정 위반 건수가 많지 않아, 배점에

비해 변별력이 거의 없음

- (지역사업자 특성 미반영) 중앙 방송사업자와 지역 방송사업자를 상대평가하는

경우, 지역 방송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함. 현재의 평가항목 및 측정방법이

중앙방송사업자의 기준에 맞춰져있어 지역사업자의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음

- (KBS지역국 평가 실효성 떨어짐)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본사(또는 총국)에서

수급하는 KBS 지역국에 대한 별도 평가의 실효성 떨어짐

□ SO/위성방송사업자

- (내용/편성영역 평가 당위성 논란) 유료 플랫폼 사업자인 SO와 위성에 대해

프로그램의 내용 및 편성을 평가하는 것의 적절성 논란. 두 유료 플랫폼 모두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기보다는 채널구성사업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채널구성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항목으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SO와 위성의 평가 구분 필요) 전국 사업자인 위성과 지역채널을 운영  
하는 지역

사업자로서의 SO 간 차이가 거의 반영되지 않음

-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 위성 방송사업자의 경우, 거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

- (자체심의 운영 평가) 지상파R와 마찬가지로, 심의제재 사전지적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항목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

- (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여부 평가) 심의규정 위반 건수가 많지 않아 배점에 비해

변별력이 거의 없음

- (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여부 평가) 심의규정 위반과 마찬가지로, 편성규정 위반

건수가 많지 않아 변별력이 거의 없음

- (직접제작/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평가) 대부분 만점을 획득함에 따라,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 PP(보도/홈쇼핑)

- (자체심의 운영 평가) 보도PP의 특성상 자체심의가 어려워, 자체심의 평가항목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홈쇼핑PP의 경우, 평가항목이 전담부서 설치여부와 제작진

참여여부로 이루어져 다소 형식적인 측면 존재

-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편성 평가) 홈쇼핑PP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사업자와 프로그램의 성격이 달라, 평가항목의 도입취지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

홈쇼핑PP의 경우 다른 일반방송과는 방송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평가는 거의 의미가 없음

- (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여부 평가) 편성규정 위반 건수가 많지 않아 변별력이

거의 없음

-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 평가) 공익적 프로그램의 성격이 모호해 실효성 크지 않음

□ 지상파 DMB 방송사업자(TV/R)

- (평가항목에서의 DMB 특성 미반영) DMB용 방송프로그램 편성 평가를 제외함

모든 항목이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점수를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

- (DMB용 방송프로그램 편성 평가의 실효성 미미) 지상파계열 DMB나 비지상파

계열 DMB 모두 자사 또는 타사 프로그램을 그대로 재송신하는 형국에서 DMB용

방송프로그램 편성 평가의 의미 퇴색





## 2. 주요 논의사항

### 가. 평가항목 간 변별력 차이

#### ○ 평가항목 간 변별력 차이 발생

- (변별력 높은 항목) 자체심의, 수상실적, 심의규정, 편성규정, 재난방송, 주시청시간

균형편성,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관계법령 준수

- (변별력 낮은 항목) KI, 자체품질평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의견반영, 오보관련,

시청자위원회, 장애인시청지원, 재무건전성, 인적투자, 기술투자, 장애인/여성고용,

공정거래법 준수,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개인정보보호 등

<표 2-2> 평가항목 간 변별력 차이

구분	내용 영역	편성 영역	운영 영역
변별력 높은 항목	자체심의/수상실적/ 심의규정	편성규정/재난방송/ 주시청시간대/어린이	관계법령준수 재무건전성/인적투
자/성	KI/자체평가/		기술투자/장애인여
변별력 낮은 수/항목	시청자평가프로그램/ 경우, 의견반영/오보관련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음(약	시청자위원회/ 10점~30점 이내 시청이탈	고용/공정거래법준 데-평성여역의점수 차이가

#### ○ 이러한 평가항목

- 지상파TV의  
크며, 운영영역의



<표 2-3> 지상파 사업자 방송평가 결과(2015년도 - 2016년도 상반기)

영역	2015년도				2016년도(상)			
	KBS1	KBS2	MBC	SBS	KBS1	KBS2	MBC	SBS
내용	264.1	250.72	234.14	242.63	259.38	243.02	248.97	248.23
(300)								
편성	248.01	197.51	231.57	228.29	278.35	232.35	249.36	240.54
(300)								
운영			261.8	259.8	255.88		263.55	263.15
(300)	253.98							
총점	766.09							
(900)	PP의					보이는 데,		
	가장 크게							
- 종합편성								
점수 차이가 PP			결과	년도	2016	상반기 )		

<표 2-4> 종합편성

영역	2015년도				2016년도(상)			
	TV조선	JTBC	채널A	MBN	TV조선	JTBC	채널A	MBN
내용	157.57	153.69	155.74	171.48	168.92	188.78	172.32	169.87
(210)								
편성			235.86	229.49	242.99		229.76	235.79
(215)	161.43	176.74	169.57	163.51	158.74	167.92	152.96	162.97
운영							568.63	
(275)	244.99	특성	반영	부족				
총점	563.99	등			등			
(700)				특성	미흡			

나. 매체별, 채널별

- SO/위성방송  
평가체계를



- SO/위성 등의 유료방송은 플랫폼 특성상 자체제작 건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와 같이 내용영역 평가(프로그램 수상실적, 자체심의, 방송심의 준수 여부

등)에 높은 배점 부여\*

\* 내용영역 평가 배점: 보도PP 170점, 홈쇼핑PP 160점, SO/위성 140점

- 지상파R, 홈쇼핑PP 등의 경우 생방송이 많아 사전심의 대상건수가 적으나 관련

평가항목에서 지상파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배점 부여

\* 지상파TV 25점 / 지상파R 25점, 홈쇼핑PP 50점

○ 평가항목의 도입 취지와 상이한 획일적 적용에 따른 매체별 특성 반영 부족

- 가입자 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평가'의 경우, 홈쇼핑PP(40점)와 유료 방송

(30점) 이외 다른 매체에도 높은 점수 부여(지상파, 종편PP 등 20점)

- 외주제작과 관련된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의 경우, 매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점수 부여(10점)

다. 평가항목 및 배점에 대한 객관적 근거 부족

○ 중앙 지상파방송사와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배점이 같고(900점), 지상파 라디오,

DMB, SO/위성, 보도PP, 홈쇼핑PP의 배점이 동일함(500점)

- 평가항목이 많지 않은 경우, 총점을 맞추기 위해 특정 항목의 배점이 다른 매체에

비해 높게 설정\*됨

\* 홈쇼핑PP의 경우 대부분 생방송으로 진행되어 자체심의 평가의 실익이 적음에도

배점은 지상파TV(25점)보다 높음(50점)

○ 사업자군별 평가항목의 수 및 평가항목 간 우선순위 등에 따른 배점 체계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합의 부족

- 예를 들어, 지상파TV와 종편PP는 평가항목 수가 동일함에도 총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위성방송과 SO는 평가항목 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총점이 동일함

<표 2-5> 사업자군별 평가항목 수와 배점

사업자군(群)	평가항목 수	총점
지상파TV	23개	900
지상파R	15개	500
지상파DMB	16개	500
위성/SO	위성(19개)/SO(21개)	500
중편PP	23개	700

<표 2-6> 현행

영역

보도PP	17개	500
홈쇼핑PP	19개	500
평가척도		SO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70		35

내용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25 12.5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평가 30 25 25 10 15  
 자체심의 운영 평가 25 25 25 20 22.5 20 50

영역

방송심의	100 100 100 준수 평가	70 85 70	70
인증위/법원	40 30 30 오보관련 평가	20 30 30	-
시청자	30 20 20 종합 평가	30 30	20
시청자	소계 350 200 200 편성 평가 30	20 20 20 0 1 140 25 0 17	20 60
방송편성 관련	준수 여부 평가 50 50 50 종합 평가 30	30 25 20 50 50	
시청자위원회의	60 편성 평가	30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60	20 35 10	10
장애인 시청지원	운영현황 종합 평가 80 70 10	65 70	10
편성 재난방송	10 편성 평가	10	
영역 비상업적	주시청시간대 지역방송사 DMB방송용	45	
시청자	편성평가(TV, 중편) 60 비율 평가 (TV-지역) 60		10

영역 평가척도	지상파 SO TV R DMB	PP 중편 보도 흡쇼평 20
직접/외주제작		
편성 시청자참여프로그램	10	
영역 지역성구현 프로그램	20	

소계 350 120 120 100 260 150 60

운영 영역	재무의	30 30 30 종합 평가	30	30	30		30		
	경영투명성	종합 평가 30 30 30	30	30	30				
	인적자원	20 10 10 개발 투자 평가	10	10	10				
	방송기술	20 20 20 고용 평가	20	20	20		10		
	장애인/여성 참여	투자 평가 30 20 20	20	30	20		20		
	방송법, 공정거래	40 40 40 평가	40	40	40		40		
	개인정보보호의	20 20 20 적절성 종합 평가	30	20	20		10		
	확립 노력 평가 10 10 10	10	10	10		40			
	채널공급	배분 적정성	25						
	성 다양성	30							
	만족도 평가	15							
	수신료 채널구 상품선 합의	체 만족도					30		
	소비자 총 등	민원 평가					30		
		적정성 평가					20		
	라. 법령 위반	소계 200 180 180							
○ 현행 시스템은 (총점에 따른	계 900 500 500	260	190	180	20	80			
	기본 배점으로 인한 사전에 정하고, 평가항목별	500	700	500	50	00			
	배점 할당제)이라고 할 수 있음								

- '17년 평가시 처음 적용된 언중위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항목 (지상파 40점)의

효과  
경우, 거의 모든 사업자가 만점을 받아 총점이 전년 대비 40점 상승되는

발생

- 이외에도, 심의규정(지상파 100점), 편성규정(지상파 50점), 관계법령  
준수(지상파

40점) 등은 기본배점 부여 후 위반 건당 감점하는 평가방식으로 인해 전  
체 총점





(900점) 중 감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총점의 약 1/3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본적

으로 부여받고 있음(기본점수에 의한 평가점수의 왜곡)

- 이에 따라, 총점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등급)에 따라,

사전에 정해져 있는 배점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시스템(중요도에 따른 항목별

등급제)으로의 개정 필요

<표 2 - 7> 현행 총점에서 감점항목이 차지하는 비중

(A-B)	현행총점(A)	감점배점(B)	감점비율(%)	총점
지상파TV	900점	230점	25.6%	670점
지상파R	500점	220점	44.0%	280점
지상파DMB	500점	220점	44.0%	280점
위성/SO	500점	160점	32.0%	340점
종편PP	500점	140점	28.0%	360점
보도PP	700점	205점	29.3%	495점
홈쇼핑PP	방법의 합리적 개선	필요		
마. 평가기준	및 방법이 미흡하거나 합리적 개선 달성	현실적이지	부분의 수정	보완을 통해

○ 평가기준

평가제도의

- 재난방송 평가방식 개선(사업자군별 구분 평가 및 평가등급 세분화 필요)

- 주시청시간대 보도분야 평가방식 개선(보도분야 판정 기준 및 비율 조정)

- 장애인 고용평가 방식 개선(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2배 가산 여부)

- 외주제작시장 표준계약서 적용대상 확대(EBS 제외되어 있음)

- 방송기술 투자 평가방식의 비실효성 개선(TTA 인증제품의 부족)

- 관계법령 준수 평가의 제재조치 대상기관 확대(과기정통부 포함 필요)

바. 방송환경 변화에 긴밀한 대응 필요

- 방송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의 신설 필요
  - 외주제작 인력 안전 강화 평가
  -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정착 노력 평가
  - 지상파,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 보도PP,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
  - SO·위성, 재난방송 편성 평가(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반영)
  - 홈쇼핑PP,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방송법 개정 반영)

# 제 3 장 평가규칙 개정(안)

## 제 1 절 기본방향

### <목표>

방송평가의 실효성 및 합리성 제고를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확보

개선		<p style="text-align: center;"><b>추진 과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위반 등 감점항목의 배점방식 개선</li> <li>○ 매체별·채널별 평가 차별화</li> </ul>
매체특성 반영 확대 및 평가체계 객관성 확보	<p style="text-align: center;">[총점 및 평가영역별 배점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의 배점 타당성 확보 [평가항목별 우선순위 설정]</li> </ul>	
평가기준 및 합리적	<p><b>방법의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재난방송 평가방식 개선</li> <li>○ 외주제작 주시청시간대 방식 개선</li> <li>○ 방송기술 고용평가 표준계약서 적용대상 명확화</li> <li>○ 관계법령 시장 투자 평가 방식 개선</li> <li>○ 준수 투자의 제재조치 대상기관 확대</li> </ul>	
환경 변화 - 평가항목	<p><b>적극 대응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주제작시장의 프로그램</li> <li>○ UHD 수상실적</li> <li>○ 프로그램 수상실적</li> <li>○ 재난방송 편성</li> <li>○ 시청자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생 협력 강화 평가( 지상파, 종편PP)</li> <li>편성 평가( 지상파)</li> <li>평가( 보도PP)</li> <li>평가( SO, 위성)</li> <li>운영 평가( 홀쇼PP)</li> </ul>



## 제 2 절 개선방안

### 1. 매체 특성 반영 확대 및 평가체계 객관성 확보

#### 가. 법령 위반 등 감점항목의 배점방식 개선

○ (문제점) '17년 평가시 처음 적용된 언중위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항목

(지상과 40점)의 경우, 거의 모든 사업자가 만점을 받게 되어 총점이 전년 대비

40점 상승되는 효과 발생

- 이외에도, 심의규정(지상과 100점), 편성규정(지상과 50점), 관계법령 준수(지상과

40점) 등은 기본배점 부여 후 위반 건당 감점하는 평가방식으로 전체 총점(900점)

중 감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총점의 약 1/3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본적으로

부여받고 있음(기본점수에 의한 평가점수의 왜곡)

○ (개선방안) 배점(기본점수) 부여 후 위반 건당 감점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항목의

경우, 기본점수로 운영하지 않고 이를 감점으로 전환

- 다만, 특정 항목의 지나친 감점으로 인해 전체 평가점수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한도 설정\* 검토

\* 항목(심의규정, 편성규정, 관계법령, 오보결정)별로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 나. 매체별 · 채널별 평가 차별화

○ (총점) 감점항목의 기본배점 미부여시 달라지는 총점을 사업자군별 평가항목 수와

기존 총점의 차이, 사업자별 평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총점 설정

- 사업자군별 매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를 직접 비교·평가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군별로 총점을 상이하게 설정

- 지상파TV(중앙)의 배점을 가장 높은 700점으로 설정하고, 지상파TV(지역)/중편PP는



600점, 보도/홈쇼핑/SO/위성은 항목 신설\* 등을 고려하여 500점, 상대적으로 평가

항목의 수가 적은 지상파R와 DMB는 300점으로 설정

<표 3-1> 사업지群별 총점(현행 vs 조정)

	현행	감점제도 개선 후(항목 수)	조정
지상파TV(중앙)	900점	670점(19개)	700점
지상파TV(지역)	900점	575점(17개)	600점
중편PP	700점	495점(19개)	600점
보도PP	500점	310점(13개)	500점*
홈쇼핑PP	500점	360점(16개)	500점*
SO	500점		500점*
위성	500점		500점*
지상파R	500점		300점
지상파DMB	500점		300점
	운영 비중 기준		운영영역이 차지하는 기준
○ (내용/편성, 비중을 유지하되, 영역 비중 확대			

<표 3-2> 사업지群별 총점 내 내용/편성, 운영의 비중

구분	총점	기준 비중	내용/편성	운영
지상파TV(중앙) (21.4%)	700점	78:22	550점(78.6%)	150점
지상파TV(지역) (25.0%)	600점	78:22	450점(75.0%)	150점
중편PP (25.0%)	600점	73:27	450점(75.0%)	150점
보도PP (30.0%)	500점	48:52	200점(40.0%)	300점(60.0%)
	500점	64:36	350점(70.0%)	150점
홈쇼핑PP (60.0%)	300점	44:56	150점(30.0%)	350점(70.0%)
	300점	44:56	200점(66.7%)	300점(33.3%)
SO				
위성				
지상파R				
지상파DMB				

다. 사업자群별 평가항목과 배점 타당성 확보

○ 기존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항목의 우선순위(1등급~5등급) 재설정

※ 아래의 총점은 감점 항목 제외하고 남은 점수임

- 기본적으로 내용/편성, 운영 내 평가항목 간 중요도를 동일하게 유지하  
되, 매체별

특성이 두드러지는 경우, 평가항목 내 중요도 상이하게 설정

- 내용편성 영역과 운영 영역을 구분하여, 각 영역별 우선순위를 설정하  
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용편성 영역과 운영 영역의 총점 배분(가중치)이 다  
르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해도, 동일한 배점을  
가지는

것은 아님.

- 현행 배점과 우선순위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에 맞게 배점 조  
정 필요.

다시 말해, 우선순위에 비해 현행 배점이 높은 경우, 배점을 낮게 조정  
하고,

우선순위에 비해 현행 배점이 낮은 경우, 배점을 높게 조정

- 기본적으로 동일 우선순위 내에 있는 항목 간 배점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하나,

세부적으로 동일 우선순위라고 하더라도, 배점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는 있음.

○ 지상파TV

- (1순위) 프로그램 품질 평가의 경우, 방통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시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의 품질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종합편성 채널의 가  
장 큰 특징이

보도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도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의

품질을 통제한다고 볼 수 있는 자체심의와 묶어서 1순위로 설정 가능

- (2순위) 어린이, 장애인, 재난방송, 균형편성 등은 지상파TV가 감당해  
야 할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2순위 설정 가능

- (3순위)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시청자 의견반영 등은 방송사가 담보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3순위 설정 가능
- (4순위) 시청자위원회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이  
미 어느  
정도 안착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4순위 설정

- (5순위) 삭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것도 무방하나,

항목 도입의 취지를 감안, 가장 낮은 순위로 설정

<표 3-3> 평가항목의 우선순위-지상파TV(중앙)

우선순위	내용/편성	운영
1 (30)	프로그램 품질 평가(70) 자체심의/공정정보위원회(25) 프로그램 수상실적(30)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60)	기술/콘텐츠투자
2 장애인 시청지원(60) (10)	균형 편성(60) 자체 품질평가(25) 평가 프로그램 편성(30) 재난방송 편성(80) 시청자 의견반영(30) 12개(510점) 시청자위원회(30) 공익광고 편성(10)	채무건전성(30) * 공정 거래 확립
3		
4		
5	)는 현행 배점	
총점		
※ 항목 뒤에 있는(		
○ 종편PP	채널이라는 점에서 지상파TV와 큰 차이가 있지 내용이 거의 유사할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도 크게 다르지 않음	때문에,

- 기본적으로

항목의 수나

- 다만, 지상파와 종편이 성격 상, 시장 상황 상 차이가 있으므로, 편성의 지향점은

동일하더라도 비중은 종편에 맞게끔 투자를 유도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게끔

전략적으로 별도로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종편에 대해서는 방송기술 투자 비중을

낮추고, 콘텐츠 투자의 비중을 지상파TV와 달리 가져갈 여지가 있음



<표 3-4> 평가항목의 우선순위 - 종편PP

우선순위	내용/편성	운영
1 (30)	프로그램 품질 평가(35)  자체심의/공정정보도위원회(22.5) 프로그램 수상실적(15)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30)	기술/콘텐츠투자    재무건전성(30)
2 (10)	장애인 시청지원(35)	균형 편성(45)  *공정거래 확립
3	시청자 의견반영(20) 12개(345점) 시청자위원회(25) 공익광고 편성(10)	자체 품질평가(12.5) 재난방송편성(5) 편성(30)
4		
5		
총점	)는 현행 배점	
※ 항목 뒤에 있는( )는		
○ 지역 지상파TV	특성을 감안, 사업자군(群) 하나를 아예 신설하고,	관리
	평가 신설 취지를 감안, 지역 자체 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 지역 지상파TV의
- (1순위) 평가를 1순위로 설정, 평가 강화 필요
- (2순위) 중앙 지상파TV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장애인, 재난방송 등은 지상파TV가 담당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2순위 설정 가능
- (3순위)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시청자 의견반영 등은 방송사가 담보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3순위 설정 가능
- (4순위) 시청자위원회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안착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4순위 설정
- (5순위) 삭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것도 무방하나,

항목 도입의 취지를 감안, 가장 낮은 순위로 설정

<표 3-5> 평가항목의 우선순위-지역 지상파TV

우선순위	내용/편성	운영
1	자체제작 프로그램(60) - 지역성 프로그램 평가 신설 프로그램 수상실적(30) 장애인 시청지원(60)	재무건전성(30)
2	재난방송 편성(80)	기술/콘텐츠투자
(30)	프로그램 편성(60) 자체심의/공익보도위원회(25)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편성(30)	
3	10개(415점) 시청자위원회(30)	
4	공익광고 편성(10)	
5	17개(575점)	
총점	는 현행 배점	
※ 항목 뒤에 있는(		
○ 보도PP	보도의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체심의와 묶어서
- (1순위)	장애인,	등은 보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채널이 감당해야 할
- (2순위)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2순위 설정 가능
- (3순위)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시청자 의견반영 등은 방송사가 담보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3순위 설정 가능
- (4순위)		시청자위원회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안착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4순위 설정





<표 3-6> 평가항목의 우선순위 - 보도PP

우선순위	내용/편성	운영
1	자체심의/공정보도위원회(20)	
2	장애인시청지원(10)	재무건전성(30)
(20)	재난방송 편성(70)	기술/콘텐츠투자
		인적자원(10)
	시청자의견반영(20)	
3	시청자위원회(20)	경영투명성(30)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편성(30)	장애인/여성(20)
4	6개(170점)	
5	13개(310점)	
총점	배점	

※ 항목 뒤에 있는(

○ 홈쇼핑PP

상품을

홈쇼핑 채널의 특성 상, 허위과장 내용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체심의와 묶어 1순위로 설정 가능

- (1순위)

제도적

- (2순위) 장애인, 재난방송 등은 시청자 층이 매우 넓은 홈쇼핑PP도 감당  
해야 할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2순위 설정 가능

- (3순위)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시청자 의견반영 등은 방송사가 담보해  
야 할 기본

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3순위 설정 가능

- (5순위) 삭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것도  
무방

하나, 항목 도입의 취지를 감안, 가장 낮은 순위로 설정



<표 3 - 7> 평가항목의 우선순위 - 흡소핑PP

우선순위	내용/편성	운영
1	자체심의/허위과장방지(50)	재무건전성(30)
2	장애인 시청지원(10)	기술/콘텐츠투자
(20)	재난방송 편성(10)	* 개인 정보 보호
(40)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20)	인적자원(10)
	시청자 의견반영(20)	경영투명성(30)
3		
4	6개(120점)	
5	)는 현행 17개(360점)	
총점	배점	
※ 항목 뒤에 있는(		
○ SO/위성	다만,	운영하는 위성의 경우, 내용편성보다는 위주로
		가이드채널이라고 하더라도, 채널을 운용하는 이상, 채널의

- 기본적으로

평가 가능.

내용/편성 영역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실정

- SO의 경우, 지역채널을 운용하므로, 지역채널에 대한 내용편성 영역 평가가 필요

- (1순위) SO의 경우 지역채널의 존재이유라 할 수 있는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의

편성 평가를 1순위로 설정 가능

- (2순위)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역시 지역 채널의 특성을 감안, SO 사업자가 감당

해야 할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2순위 설정 가능

- (3순위) 시청자 의견반영 등은 방송사가 담보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3순위 설정 가능

- (4순위) 프로그램 제작 자체가 많지 않아 프로그램 수상 실적이나 자체

심의회

가지는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4순위 설정

<표 3-8> 평가항목의 우선순위 - SO/위성

우선순위	SO/위성(플랫폼) 운영	+(SO)지역채널 내용/편성
1	지역성프로그램(20) 재무건전성(30) 기술/콘텐츠투자(20)	장애인 시청 지원
(20)		
2	*개인정보보호(30) 인적자원(10)	시청자참여프로그램
(10)	수상방영(30) 시청자의견반	영(20)
3	장애인/여성(20) 직접/외주제 채널구성다양성(15) *프로그램 수상 *자체심의 *공정거래확립(10)	작(20) 실적(10) (20)
4	10개(220점) 7개(120점)	
5	는 현행 위성 10개(220점)/SO 17개(340점)	)
총점	배점	
※ 항목 뒤에 있는(		
○ 지상파R	지상파R가 가지는 특성을 감안, 재난방송의 매우 유용한	점에서,
	설정 가능	

- (1순위)

1순위로

- (2순위) 프로그램 내용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수상실적을 2순위로 설정 가능

- (3순위) 시청자 의견반영은 방송사가 담보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3순위

설정 가능

- (5순위) 생방송이 많아 자체심의 자체가 실효성이 크지 않음. 이에 따라,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것도 무방하나, 항목 도입의 취지를 감안, 가장 낮은 순위로 설정



<표 3-9> 평가항목의 우선순위-지상파R

우선순위	내용/편성	운영
1	재난방송 편성(70)	재무건전성(30)
2	프로그램 수상실적(25)	기술/콘텐츠 투자
(20)		인적자원(10)
3 시청자 의견반영(20)	경영투명성(30)	장애인/여성(20)
4		
5	4개(140점) *자체심의(25)	
총점	11개(280점) 배점	
※ 항목 뒤에 있는( )는 현행		
○ 지상파DMB		
- DMB의 경우,	거의 없이 다른 채널의 수준계로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
독자적인	DMB 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 방식에 문제가 있음.	

심지어, MBC DMB-R의 경우 DJ도 없이 음악만 트는데도, 별도의 프로그램 편성

으로 인정받고 있음. 하지만, DMB 평가 항목에 대한 별도의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 그런 측면에서, DMB의 현재 평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1순위) DMB의 역할과 기능이 도입 취지와 왜곡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DMB용

프로그램 편성 평가를 1순위로 설정할 수밖에 없음

- (2순위) 재난방송은 여전히 지상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2순위

설정 가능

- (3순위) 지상파TV 등과 마찬가지로, 시청자 의견반영은 방송사가 담보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3순위 설정 가능

- (5순위) 실질적으로 자체심의 자체가 거의 무의미해, 항목 자체를 삭제



하는 것도

무방하나, 항목 도입의 취지를 감안, 가장 낮은 순위로 설정

〈표 3 - 10〉 평가항목의 우선순위 - 지상파DMB

우선순위	내용/편성	운영
1	DMB방송용 프로그램 편성(60)	
2	프로그램 수상실적(25)	재무건전성(30)
(20)	재난방송 편성(10)	기술/콘텐츠투자
		인적자원(10)
3 시청자 의견반영(20)	경영투명성(30)	
		장애인/여성(20)
4		
5	5개(140점) *자체심의(25)	
총점	12개(280점)	
※ 항목 뒤에 있는( )는 현재 배점		
※ 항목 뒤에 있는( )는 현재 배점		
○ 일부 항목(위의	* 표시)의 경우 사업자별 우선순위 차등 적용 개인정보보호의 경우 매체별로 다른 우선순위를	있음
- 공정거래확립이나		
※ 외주제작과		

하고 있는 유료플랫폼과 홈쇼핑PP는 개인정보보호 평가항목에 높은 우선순위 부여

라. 총점, 내용/편성 · 운영 비중, 항목 간 우선순위 고려한 평가체계 마련

○ 기본적으로 항목의 중요도는 배점의 크기와 연관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현행 배점 조정 필요

※ 다음의 표는 전문가 연구반을 통한 방안으로, 추후 우선순위, 평가항목 신설 등에

따른 배점 조정 가능



<표 3 - 11> 평가항목의 배점조정 - 지상파TV

		지상파(TV)-중앙	
우선순위	내용/편성	운영	
1	프로그램 품질 평가(70→65)	기술/콘텐츠투자(30→	
40)	자체심의/공정정보도위원회(25→65)		
	프로그램 수상실적(30→50)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60→50)	재무건전성(30→	
25)	편성(80→55)		
	균형 편성(60→50)		
2	장애인 시청지원(확립, 장애가(25(60)→50)	공정거래 확립(10→15)	
30)	방송사평가프로그램 편성(30→35)	인적자원(20 0→15)	
	시청자	경영투명성(3	
	시청자 의견반영(30→35)		
3	UHD 프로그램 편성(0→30)	장애인/여성(	
	시청자위원회(30→20)	(20→5)	
4	비상업 적 공익광고 편성(10→10)	개인정보보호	
5	12	7개(160점→	
총점		19개(670점)→20개(700점) - 종편 PP	

<표 3 - 12> 평가항목의

		종편PP	
우선순위	내용/편성 운영		
	품질 평가(35→55)		
1		기술/콘텐츠투자(30→	
35)	편성(65→45)		
	자체심의/공정정보도위원회(25→50)		
	방송사평가프로그램 편성(30→35)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30→35)	재무건전성(30→	
25)	의견반영(20→35)		
2	장애인 시청지원(확립, 장애가(25(60)→50)	*공정거래 확립(10→	
30)	12개(345점→450점)		
	19개(495점→600점)		
3			
4			



<표 3-13> 평가항목의 배점조정 - 지상파TV(지역)

		지상파(TV)-지역	
우선순위		내용/편성*	운영
1		자체제작 프로그램(60→70)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평가 강화) 프로그램 수상실적(30→50)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60→50)	
35)		편성(80→60)	채무건전성(30→
2	자체심 장애인 시청자	지역공감부도위원회(25→50) 평가프로그램 편성(30→40)	기술/콘텐츠투자(30→
35)	시청자 시	청자 의견반영(30→40)	→20) 인적자원(20 0→20) 경영투명성(3 장애인/여성(
3		적 공익광고 편성(10→10)	(10→10)
4	비상업		*공정거래확립 (20→10) *개인정보보호
5		10개(415점→450점) 7개(160점→ 17개(575점→600점)	
총점	프로그램	강화하기 위해, 각 항목별로 수중계 프로그램과 평가하되, 비중을 달리하여 합산	자체제작
* 자체제작/편성 또는 편성 프로그램을			
- 보도 PP			

<표 3-14> 평가항목의

		보도PP	
우선순위		내용/편성	운영
1		자체심의/공정정보도위원회(20→70) 프로그램 수상실적-신설(0→50)	
35)	시청자		재력연출편성(30→20)
2	장애인시청자	원(수화, 자막 등)(10→60)	기술/콘텐츠투자(20→
35)		재난방송 편성(70→60)	→
	시청자	의견반영(20→40)	인적자원(10→20)
3		13개(310점)→14개(500점)	
4			
5			

총점

<표 3 - 15> 평가항목의 배점조정 - 홈쇼핑PP

		홈쇼핑PP	
우선순위	내용/편성	운영	
1	자체심의/허위과장광고방지(50→50)	재무건전성(30→40)	
2	장애인 시청지원(수화, 자막 등)(10→40)	기술/콘텐츠투자(20→	
40)	재난방송 편성(10→40)	개인정보보호(30→30)	
40)	시청자 평	편성(20→25) 장애인/여성	(20→30)
	시청자 의견반영(20→25) *협력업체만족	인적자원(10→30)	(30→30)
3	시청자 위원회-신설(0→15)	*상품선정/수수	*소비자원 민
4	시청자 정보프로그램(10→5) *공정거래확립	(10→10)	
5	6개( 120점)→7개(200점) 10개(240점)→		
총점	16개(360점→500점)		
	- SO		

<표 3 - 16> 평가항목의

		SO(플랫폼) + 지역채널	
우선순위	운영 내용/편성	지역성프로그램(20→50)	
1	재무건전성(30→40)		
→30)	기술/콘텐츠투자(30→40)	장애인시청지원(수화, 자막 등)(20	
2	*개인정보보호(30→40)	시청자 참여프로그램(10→30)	견반영(20→20)
	*주선립배(25→40) 시청자의	재난방송 편성	신설(0→30)
	여성(20→25) 직접/외		
3	장애인 다양성(15→25)	주제작(20→20)	
	채널구성 프로그램	수상실적(10→10)	
	*공정거래	자체	
	래확립(10→10)		
4	점)→9개(300점) 7개(120		
5	10개(220 SO 17개(340점→500점)		
총점			





<표 3 - 17> 평가항목의 배점조정 - 위성

우선순위	위성(플랫폼)	+위성 가이드채널
	운영	내용/편성
1	재무건전성(30→45) 기술/콘텐츠투자(20→45)	장애인지정지원(수화, 자막 등)(20)
→35)		
2	*개인정보보호(30→45) 인적자 *수신료배분(10→35)	재난방송 편성-신설(0→35)
	경영투 명성(30→35) 시청자의	견반영(20→25)
3	장애인 다양성(15→30) 채널구성 *공정거래	직접/외 프로그램 주제작(20→25) 수상실적(10→15)
4	확립(10→10)	
5	10개(220점) 9개(350점) 5개(90점) 위성 15개(310점→500점)	6개(150점)
총점		
	- 지상파 R	

<표 3 - 18> 평가항목의

우선순위	내 용/편성	운영
	재난방송 편성(70→60)	
1		재무건전성(30→30)
2	프로그램 수상실적(25→45)	기술/콘텐츠투자(20→30) 장애인/여성(20→25) 인적차원(10→25)
3	시청자 의견반영(20→35)	경영투명성(30→25) *공정거
4	4개(140점→150점) 7개(140점→150점)	*개인정보보호(20→5)
5		
총점	11개(280점→300점)	

<표 3 - 19> 평가항목의 배점조정 - 지상파DMB

		지상파DMB	
우선순위		내용/편성	운영
1		DMB방송용 프로그램 편성(60→30)	
45)		프로그램 수상실적(25→25)	재무건전성(30→
2		재난방송 편성(10→25)	기술/콘텐츠투자(20→
45)			장애인/여성(20→30) 인적자원(10→30)
3	시청자	의견반영(20→15)	경영투명성(30→35) *공정거래확립 (10→10)
4		자체심의(25→5)	*개인정보보 호(20→5)
5			7개(140점→ 200점)
	총점	12개(280점→300점)	
		개선	
<b>2. 평가기준 및 방법의</b>			
가. 재난방송	평가등급	폭이 넓어 사업자별 편성실적 차이에 대한 평가결과	

○ (문제점 1)

반영이 미흡

※ 전년도 평가 시 중간 구간의 경우 재난방송 편성 실적이 99분~1,673분 이 한 구간

으로 산정되어 동일한 점수(12점)로 평가되어 차별성이 낮음

구분	평가기준(분)	평가점수
	2,462분 이상	20
	1,674분 이상	16
재난방송	99분 이상	12
편성실적	91분 미만	8
	(자막방송)	4

	0 0	



- 현행 기준에 따르면, ① 재난방송 평가, ② 재무건전성 평가, ③ 인적자원개발투자

평가, ④ 방송기술 투자평가, ⑤ 여성고용평가, ⑥ 수신료 배분의 적절성 평가

에도 5등급 상대평가 적용

○ (문제점 2) 방송사별로 재난방송 편성실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전체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상대평가

※ 지상파TV와 종편PP, 보도PP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반면, 지상파라디오,

지상파DMB, 홈쇼핑사업자 등은 낮은 점수를 받고 있음

○ (개선방안) 방송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群)을 설정\*하고, 현행

5등급 평가를 9등급으로 세분화

- 현행 재난방송 편성 평가는 모든 방송사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어 편성의 차별성 구분을 위하여 매체별 구분 필요

\* 4개 그룹 분류(안): 지상파TV/종편PP/보도PP/지상파DMB(TV), 지상파R/지상파DMB(R),

SO/위성, 홈쇼핑PP

- 5등급 구분을 9등급(ex. 프로그램 수상실적)으로 세분화 필요\*

\* 재난방송 최고실적이 100분인 경우, 87.5분 이상(30점), 75분~87.5분 미만(27점),

62.5분~75분 미만(24점)

평가등급의 비율 (9등급)	지상파 TV 30점	지상파R, 지상파DMB 25점	SO, 위성방송 10점	종편 PP 15
87.5% 이상	30점	25점	10점	15
75% 이상 ~ 87.5% 미만	27점		22.5점	9점
62.5% 이상 ~ 75% 미만	24점	20점	8점	12
50% 이상 ~ 62.5% 미만	21점		17.5점	7점

37.5% 이상 ~ 50% 미만 18점 15점 6점 9  
 점  
 25% 이상 ~ 37.5%  
 12.5% 이상 ~ 25%  
 12.5% 미만  
 0%

15점 미만	12.5점	5점	7.5점	
12점 미만	10점	4점	6점	
9점	7.5점	3점	4.5점	
6점	5점	2점	3점	

나.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 시 보도 분야 편성비율 조정

○ (문제점) 오락분야는 사업자별 평가점수의 편차가 있으나, 보도 분야는 현행 평가

기준(42%) 적용 시 모든 사업자가 만점을 받고 있음

○ (개선방안) 방송평가의 현행 보도분야 분류기준\*를 유지하되, 주시청시간대 편성

비율은 축소(42%→40%)

\*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국내외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

- 현행 평가체계와의 연계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편성비율

조정

- 종편PP 전체 방송시간대 보도관련 분야 축소는 재승인 심사 및 이행 실적 점검

등을 통해 균형적 편성 유도 가능

- 종편PP 재승인 보도관련 분야 분류기준\*으로 변경 적용하되, 주시청시간대 편성

비율은 유지(42%)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17. 3월 종편 재승인 심사 시 관련 방송프로그램 종류를 보도관련 분야(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로 분류

- 다만, 종편PP 재승인 시 적용되는 보도관련 분류기준 확대 적용으로 방송사

(종편PP)의 보도관련 분류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우려되며, 보도관련 분류기준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방송평가 시 지상파TV, 종편PP 등 방송사의 혼란\* 우려됨

\* 현재 전체 방송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의 보도·교양·오락분류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변경 기준에 따른 보도관련 프로그램 재분류 및 추가자료 제출 등 중복

업무에 따른 혼란 가중





다. 장애인 고용 평가방식 개선

- (문제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 경우 가산토록 하고 있으나, 현행 평가에는 미반영

※ 현재는 상시 근로자수 대비 장애인 고용이 2.5% 이상일 경우 10점 만점을 부여하고

그 다음부터 0.5% 간격으로 5구간 구분하여 평가하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산 없음

\*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제27조 · 제28조 · 제28조의2 · 제29조 · 제33조

및 제79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 (개선방안)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는 2배 가산하여 장애인 고용비율 산정

- 아울러, 장애인 고용비율을 평가하는 기준을 법령\*에 따라 현행 2.5%보다 상향

조정('17년~'18년: 2.9%, '19년 이후 3.1%)

\*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라. 외주제작시장 표준계약서 적용대상 명확화

- (문제점) 표준계약서 관련 평가대상 사업자가 지상파TV 3사와 종편PP로 명시되어

있어, EBS의 경우 '표준계약서 활용의 적정성'평가를 받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세부 평가척도인 '표준계약서 작성 준수 및 활용 여부'의 적용대상

사업자에 'EBS'를 포함하여 평가

마. 방송기술 투자 평가방식 개선

○ (문제점) 현재 '방송기술 관련 투자액 대비 인증제품 투자비 비율'에 대한 5등급

평가를 하고 있으나, TTA 인증제품이 주로 STB, 시청각장애인방송지원장비 등에

한정되어 이에 대한 사업자의 실적평가 곤란

○ (개선방안) '방송기술 관련 투자액 대비 인증제품 투자비 비율' 항목 삭제

바. 관계법령 준수 평가의 제재조치 대상기관 확대

○ (문제점)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조치만을 다루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재 조치가 미포함

○ (개선방안) 해당 평가항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재조치를 포함



### 3. 환경변화 적극 대응-평가항목 신설

#### 가. 외주제작시장의 상생 협력 강화

○ (문제점 1) 외주제작 인력의 경우, 부족한 제작비로 인해 위험도 높은 제작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기본적인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보상 문제 발생

○ (개선방안)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를 기존 평가항목\*에 통합·반영

\*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 (문제점 2)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와 독립창작자 상호 간 상생의 방송제작을 위한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이 마련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17. 12월) 후속 조치

※ 인권선언문(예시)(제18조) 방송사(제작사)의 독립창작자의 권리 보호, 방송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독립창작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가칭)' 운영 여부 등

○ (개선방안)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상생협의체 운영' 등

대표적 항목을 기존 평가항목\*에 통합·반영

\*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 나. 지상파, UHD프로그램 관련 편성 평가

○ (문제점) UHD프로그램 본방송이 시작됨에 따라('17. 5월 지상파TV) UHD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방송매체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개선방안) UHD프로그램 관련 편성 평가항목 신설



다. 보도PP,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

○ (문제점) 다른 사업자(지상파, 종편PP, SO·위성)는 모두 '프로그램 수상 실적 평가'

항목이 있으나, 보도PP만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 항목 부재

○ (개선방안)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위해 보도PP에 해당 평가항목 신설

라. SO·위성, 재난방송 편성 평가

○ (문제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SO와 위성방송은 재난방송의무편성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행 방송평가에는 재난방송 편성실적에 대한 평가는 없음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여야 한다.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 (개선방안) SO와 위성방송에 대한 재난방송 편성 평가항목 신설

마. 홈쇼핑PP,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

○ (문제점) 방송법\* 개정('17. 3. 14.)에 따라 홈쇼핑PP는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음

\*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고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개선방안) 홈쇼핑PP의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항목 신설





### 제 3 절 행정예고(안) 의견 검토<sup>4)</sup>

-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10. 12~11. 2)
  - 의견 접수 내역: 19건(관계부처 3건, 사업자 16건)

#### 가. 법령위반 등 감점항목의 배점방식 개선

○ (행정예고) 배점(기본점수) 부여 후 위반 건당 감점으로 평가되는 항목\*의 경우, 해당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총점에서 해당 항목의 위반 건수를 직접 감점하는 제도로 전환

\* 방송심의 규정, 언중위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편성 규정, 관계법령 준수

- 감점항목 당 최대 감점은 평가대상 사업자 총점의 10%로 설정

○ (제출의견)

- 인센티브 차원에서 현행과 같이 기본점수 부여 필요(티브로드)

- 해당 항목 당 최대 감점 폭이 과도(JTBC, TV조선, MBN)

○ (검토결과)

- 감점항목의 기본점수 부여 폐지는 해당 기본점수에 의한 전체 평가점수의 왜곡

방지를 위한 방송평가 규칙 개정의 주요 사항으로 수용 곤란

- 종편PP의 경우, 규칙 개정 이전에 해당항목의 최대감점 폭의 비율이 더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0%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으로 수용 곤란

\* 규칙 개정 이전 종편PP 총점(700점), 심의규정 위반 항목(85점)으로 약 12.1%

4)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2018. 11. 28.),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중

일부 내용 전제

## 나. 사업자군(群)별 총점, 영역/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 <총점 및 영역별 배점 조정 관련>

#### ○ (행정예고)

- 보도PP(총점 500점) 일부 항목\*의 배점 확대

\* 자체심의/공정보도위원회(20점→70점), 장애인 시청지원(10점→60점)

- 홈쇼핑PP 일부 항목\*의 배점 확대

\* 재난방송(10점→40점), 방송콘텐츠/기술 투자(20점→40점), 인적투자(10점→30점)

- SO, 내용·편성 영역 점수의 축소(기존 240점→개정안 200점)

#### ○ (제출의견)

- 법령 위반의 감점 전환으로 평가항목의 수가 감소되었으나, 기존 총점을 유지

(500점)하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연합뉴스TV)

- 보도PP, 일부 항목의 배점 확대는 과도(연합뉴스TV)

- 홈쇼핑PP, 지상파와 비교할 경우, 일부 항목의 배점 확대는 과도(신세계 티비쇼핑,

케이티하이텔)

- SO의 내용·편성 영역 점수의 확대 필요(티브로드)

#### ○ (검토결과)

- 보도PP의 매체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점(500점)을 유지, 기존 항목의 배점 조정은

평가항목별 우선순위 재설정에 따른 것으로 수용 곤란

- 항목 간 배점은 동일 사업자군(群) 내 평가항목의 우선순위와 항목 수를 고려하여

조정된 것으로 다른 사업자군(群)과의 비중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으로 수용 곤란

- 플랫폼으로서 SO의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영역 점수가 확대\*된 것으로,

추가적인 내용·편성 영역 점수의 확대는 수용 곤란

\* 기존 260점 → 개정안 300점



<개별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관련>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 (행정예고) 종편PP, 프로그램 질 평가의 배점 확대(35점→55점)
- (제출의견) 프로그램 질 평가의 배점 확대 필요(JTBC)
- (검토결과) 해당 항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개정안에서는 종편PP의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을 이미 부여했으므로 수용 곤란

②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

- (행정예고) 대부분 사업자군(群)의 해당 항목 배점 확대\*
  - \* 지상파TV(30점→50점) 지상파R(25점→45점), 종편PP(15점→40점), 보도PP(0점→50점), 위성(10점→15점)
- (제출의견)
  - 라디오의 경우, 매체 특성상 수상실적 건수가 적음에도 해당 항목의 내용·편성 영역(150점)에서의 비중(30%)이 큰 것으로 보임(아리랑제주FM)
  - 위성의 경우, 타 채널에 비해 프로그램 제작이 제한되어 수상실적 평가 제외(케이티스카이라이프)
  - 매체별 비중\*을 감안하여 배점의 확대 필요(JTBC)
    - \* 지상파TV(7.1%), 보도PP(10%), 종편PP(6.7%)
  - 기존 배점 대비 상승 폭이 크기 때문에 배점 축소 필요(TV조선, 채널A)
- (검토결과)
  - 프로그램 수상실적 건수가 적은 라디오 사업자의 특성을 감안하고 사업자 의견을 수용하여, 항목의 배점 축소(45점→35점)
    - ※ 총점을 고려하여, 자체심의 항목 배점을 10점→20점으로 확대
  - 가이드채널을 운영하는 위성의 경우, 평가항목 제외보다는 상대평가 대상인 SO의 배점(10점)과 사업자 의견을 감안하여 항목의 배점 축소(15점→10점)
    - ※ 총점을 고려하여, 시청자 의견반영 항목 배점을 25점→30점으로 확대



- 종편PP의 프로그램 수상실적 배점 확대는 평가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재설정에

의한 것이므로 수용 곤란

③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 (행정예고) 언론위 정정보도 직권결정(4점), 법원의 오보관련 판결(6점)에 대한 현행

감점체계 유지

○ (제출의견)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고, 방심위의 심의 등으로 대체 가능함으로

평가 제외 필요(JTBC, TV조선)

○ (검토결과) 현행 평가는 법원의 정정보도, 명예훼손 판결\*만을 감점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으로 수용

곤란

\* 대부분의 언론위 직권결정 건은 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짐

④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 (행정예고) 종편PP,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배점 확대(30점→40점)

○ (제출의견) 변별력이 낮은 평가항목으로 배점 축소 필요(JTBC)

○ (검토결과) 현행 항목은 사업자간 평가점수\*의 변별력이 있으며,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을 유도하는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할 경우, 사업자의 배점 축소 의견은 수용 곤란

\* '16년도 하반기 평가결과: TV조선 0점, JTBC 9.38점, 채널A 0점, MBN 0점

\* '17년도 방평위 1차 심의결과: TV조선 5.63점, JTBC 9.38점, 채널A 7.5점, MBN 0점

⑤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 (행정예고) 종편PP,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의 현행 배점(10점) 유지

\* 평가 대상 사업자: 지상파TV, 종편PP

○ (제출의견)

- SO의 경우에도 공익광고 편성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므로 평가대상에 포함
- 필요(티브로드)
- 공익광고 편성 활성화를 위해 평가 배점\*의 추가 확대 필요(JTBC)



\* 기존 10점 → 개정안 10점

○ (검토결과) 평가항목 신설 및 이에 따른 전체 항목의 배점 조정을 고려할 경우,

이번 규칙 개정에서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수용 곤란

\* 차기 규칙개정 시,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평가방안 개정 추진

- 현행 배점은 우선순위 재설정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항목의 배점 조정 시

다른 전체 항목의 배점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 의견은 수용

곤란

#### ⑥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 (행정예고) 모든 사업자군(群) 항목 배점 확대\*

\* 보도PP(20점→35점), 홈쇼핑PP(20점→40점), 지상파TV-지역(30점→35점)

○ (제출의견)

- 상대적으로 투자금액이 적은 사업자군의 경우, 평가항목의 배점 확대는 적절하지

않음(연합뉴스TV, 쇼핑엔티)

- 지역방송사업자의 경우, 경영환경 악화로 투자가 곤란하므로 현행 배점 유지

필요(광주MBC)

○ (검토결과) 해당 항목의 배점 확대는 평가항목별 우선순위 재설정 결과에 따른 것으로,

평가 산정기준은 절대금액이 아닌 투자비에 대한 비율 평가이고 방송콘텐츠 투자

유도를 위한 정책적 목적임을 고려할 경우, 사업자 의견은 수용 곤란

#### ⑦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 (행정예고) 보도PP,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의 배점(10점) 유지

○ (제출의견) 보도PP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10점 배점은 과도(연합뉴스TV)

○ (검토결과) 보도PP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배점(10점)은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타 사업자군\*(지상파TV, 종편PP)에 비하여 낮은 배점을 유지한  
것이므로

사업자 의견은 수용 곤란

\* 지상파TV-중앙(10점→30점), 종편PP(10점→30점)

## 다. 평가기준 및 방법의 합리적 개선

### ① 재난방송 평가방식 개선

○ (행정예고) 방송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群)\*을 설정하고, 현행

5등급 평가를 9등급으로 세분화

\* 4개 분류: 지상파TV/중편/보도PP/지상파DMB(TV), 지상파R/DMB(R), SO/위성, 홈쇼핑PP

○ (제출의견)

- 재난방송의 지역별 차이로 편성량 기준의 상대평가는 적절하지 않음으로 재난

방송 속보 요청 미실시에 대한 감점 제도로 운영 필요(아리랑제주FM)

- 편성실적보다는 재난 발생 시 대처의 적절성이 더 중요(TV조선)

- 편성량에 대한 상대평가보다는 기준목표치 제시 후에 점수를 부여하는 절대평가

방식 필요(TV조선, MBN)

○ (검토결과) 재난방송 실시율은 이미 세부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기존 평가

체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경우, 사업자 의견은 수용 곤란

### ②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

○ (행정예고) 보도 프로그램 분야 편성비율 기준 축소(42%→40%)

○ (제출의견) 해당 기준 변경의 근거 미흡(TV조선, MBN)

○ (검토결과) 평가항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시청시간대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기준을 조정\*한 것임

\* 기존 오락분야 최대 편성비율(60%) 평가 설정 감안



라. 환경변화 적극 대응(평가항목 신설)

① 외주제작 시장 상생협력 강화 평가 신설

○ (행정예고)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에 대한 안전 강화 및 방송사·외주제작사와

독립창작자 간 상생 강화를 위해,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와 '상생협의체

운영' 등을 기존 평가항목\*에 통합·반영

\*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 배점: 지상파TV-중앙 30점, 종편PP 30점

○ (제출의견)

-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서 요청 시 외주제작사의 불만 제기 가능(JTBC, TV조선)

- 상생협의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JTBC, MBN)

- 현실적으로 제출이 곤란한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기 보다는 사업자의 자율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필요(방송협회)

○ (검토결과) 외주 제작인력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는 필요한 항목이고, 상생협의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세부기준 개정 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방안 마련

② 지상파,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신설

○ (행정예고) UHD 프로그램 본방송 개시('17. 5월)에 따라, 지상파TV의 UHD 프로그램

관련 편성 평가 신설

※ 배점: 지상파TV-중앙 30점

○ (제출의견)

-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 현행 프로그램 인정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 평가 필요(방송협회)

- EBS의 경우, UHD 프로그램 본방송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평가 불가능

(EBS)

○ (검토결과)

- UHD 프로그램 편성은 재허가 조건으로 적용되고 있어 유예가 적절치 않고, 인정

기준 완화는 세부기준 작성 시 사업자 및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방안 마련

- 평가대상 사업자는 'UHD 프로그램 본방송 개시 방송사 대상'으로 한정

③ 보도PP,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 신설

○ (행정예고) 보도PP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 신설

※ 배점: 보도PP 50점

○ (제출의견) 보도PP의 채널 성격에 맞지 않는 평가항목으로 재검토 필요 (연합뉴스TV)

○ (검토결과) 보도PP의 경우에도 보도 관련 수상실적\*이 있으며, 프로그램 품질

제고라는 평가목적의 취지 등을 고려할 경우, 사업자 의견은 수용 곤란

\* 예시) 삼성언론상 전문기자상, 올해의 방송기자상 등

④ SO·위성, 재난방송 편성 평가 신설

○ (행정예고) 재난방송 의무편성 사업자인 SO와 위성에 대해서도 재난방송 편성

평가항목 신설

※ 배점: SO 30점, 위성 35점

○ (제출의견) 지역 채널을 운용하는 SO의 비중(내용편성 200점 중 30점, 15%)에 비해,

전국방송 위주의 위성방송 사업자의 비중(내용편성 150점 중 35점, 23%)이 높으므로

배점 조정 필요(과기정통부 비상안전기획관실)

○ (검토결과) 가이드채널을 운용하는 위성의 배점(35점)이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SO의

배점(30점)보다 높은 사항은, 유사 매체군임을 고려하고 관련부처 의견을 수용하여,

SO와 위성의 항목 배점을 동일하게 설정(30점)\*

\* 총점을 고려하여, 위성의 장애인 시청지원 항목 배점 확대(개정안 35점→40점)





마. 기타 검토사항

① 홈쇼핑PP, 방송심의 제규정 준수 평가 관련

○ (제출의견)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규정'의 개정(2018.9.17., 방심위)에 따라,

홈쇼핑PP의 감점을 가중하는 허위·과장 범위의 신설·확대\*에 대한 검토 필요

(방통위 방송기반총괄과)

\* 현행 제5조(일반원칙),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제23조(최상급 표현) 등 3개

조항에서 → 개정안 제65조4(결정사항 게시)의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인 제5조(일반원칙), 제6조(소비자보호)1항,

제8조(실증책임), 제9조(법령의 준수 등), 제12조(공정성) 등 49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

○ (검토결과) 심의규정 개정을 반영하는 경우, 감점 가중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해당

위반 3회부터 2배 감점)되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차기 규칙개정 시 평가방안 검토

※ 현행 방송평가는 심의규정 3개 조항(제5조, 제15조, 제23조) 위반 3회 이상인 경우

2배 감점 가중, 그 이외 조항에 대한 위반 3회 이상인 경우 1.5배 감점 가중 →

심의규정 개정사항 반영 시, 49개 조항 위반 3회 이상인 경우 모두 2배 감점

가중(감점 가중 대상 확대)

※ '17년도 방송평가 제출자료: CJ오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의 심의규정

위반사항 18건/2건\*(현행 기준) → 20건(개정 기준)으로 감점 가중(2배) 대상으로 분류

\* 18건(2배 감점 가중 대상 위반 건수) / 2건(1.5배 감점 가중 대상 위반 건수)

② SO, 위성, 홈쇼핑PP, 운영영역 평가 관련

- (제출의견) SO, 위성, 홈쇼핑PP의 운영영역 평가 제외
  - 재허가 심사사항 및 조건에 따른 이행점검 사항과의 중복(과기정통부 뉴미디어 정책과, 방송채널사업정책팀)

○ (검토결과)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내용, 편성,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용 곤란

※ SO는 '02년, 위성은 '03년, 홈쇼핑PP는 '02년부터 방송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바. 현행·행정예고안·수정안 비교

<표 3-20> 주요 변경항목의 현행·행정예고안·수정안 비교

구분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비고
총점 항목				○ 내용편성 (150점) 및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점확대 프로그램 수상실적 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파R: 25점</li> <li>위성: 10점</li> <li>○ 배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파R: 45점</li> <li>○ 배점</li> <li>- 위성: 15점</li> <li>○ 대상</li> <li>- 지상파TV (중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파R: 35점</li> <li>○ 대상</li> <li>○ 배점</li> <li>- 위성: 10점</li> <li>- 지상파TV(중앙)</li> <li>* UHD 프로그램 본방송 개시 방송사에 한</li> </ul>	(150점) 및 중요도를 시청자 배점 →30점) )* 램 함 ○ 대상 사업자 명확화 ○ 위성, 내용편 총점(150점)
UHD 프로그램 신설 편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 30점</li> <li>- 위성: 35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 30점</li> <li>- 위성: 30점</li> </ul>	항목 중요도 고려, 장애인 청지원 배점 대(35점→40점)
재난방송 신설 편성 평가				성 및 를 시 확



# 제 4 장 세부기준 개정(안)

## 제 1 절 세부기준 개정(안)

○ 방송평가 규칙 개정에 따라 실무적인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세부기준 개정

작업도 필요함

- 이에 따라, 방송평가 규칙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기준 개정(안) 작성

1) 공정정보도 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표 4-1> 공정성 관련 자율 규제 제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점수표

항목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의 구축 여부	제도의 운영결과			
		운영결과 上	운영결과 中下	운영결과 없음	운영결과
보도/홈쇼핑PP (35점)	20점/0점	15점	10점	5점	0점

관련 자율규제 방송사 내부에 다루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경우, 허위/과장	함은, 기존 별도로 구축된 이슈	달리 공정정보도 이슈*를			
		방송사	전체	또는	
- 공정성*					

\* 홈쇼핑PP의

- 자율규제 제도의 운영결과는, 운영결과의 정리, 전기 논의결과의 반영, 차기 일정

등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수한 것으로 보며, 동일

사업자군의 우수 사례를 기준으로, 그 정도에 대한 상대적 평가 실시(차등 점수

부여)



## 2)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 의견반영 결과정리는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보고서 등을 의미함

- 결과정리는 시청자 의견을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종합적/체계적

으로 정리한 것을 의미하며, 홈페이지 Q&A의 갈무리 등은 결과 정리로 인정하지 않음

- 시청자 의견의 분류, 내용 정리, 사례 제시 등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수한 것으로 보며, 해당 사업자군의 우수 사례를 기준으로, 그

정도에 대한 상대적 평가 실시(차등 점수 부여)

## 3)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자막방송, 한국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의 편성 실적을 평가

-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 방송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편성비율은 방통위가 집계하는 장애인 방송실적을 근거로 평가

※ SO/홈쇼핑PP 중 고시에 따른 의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

그램을 편성한 사업자는 희망하는 경우, 동일 기준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음

## 4)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 (평가대상)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 항목 신설 사업자(SO/위성)의 배점 조정 등





<표 4-2>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배점방식

과목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지상파	지상파	홈쇼핑	SO/	지상					
DMB		TV지역,	R	PP	위성							
			보도PP									
재난방송 편성의 적절성	재난방송의 편성 현황은 9등급 평가	- 재난피해의 예방 등을 위한 방송의 편성 실적에 대해	60점	60점	40점	30점	25점					
		- 재난방송 실시율에 대한 5등급 평가	15점	20점	15점	25점	30점	20점	15점	5점		
		- 자체 제작된 마련 여부(매점 / 없는 경우)	10점	-			-	-	-			
재난방송 매뉴얼의 적정성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	-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 여부(관련 인력 운영 시 만점 / 미 운영시 0점)	매뉴얼 마련 시 만 5점	5점		10점	10점	5점				
		- 재난방송 관련 교육 실적	교육 실적에									
재난방송 관련 안전점검 결과	안전점검 결과 미흡사항 시정조치 비율	(<표 1> 참조) 비율만큼 환산,	점수 산정 방식: 보도PP 60점	최종점수 산정		기준으로			후			
※ 지상파TV중양(55점), 각 사업자 배점												
5) 주시청시간대 최대 편성비율			평가는 아래와 같음									

○ 보도 분야

- 보도 분야의 편성비율이 40% 미만인 경우 25점, 50% 이상인 경우 0점
- 보도 분야의 편성비율이 40% 이상 ~ 50% 미만인 경우 [25점-(편성비율-40%)x2.5점]



6)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 (평가대상) 지상파TV-중앙- UHD 본방송 개시 사업자에 한정

<표 4-3>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배점방식

세부기준 UHD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	배점 30점
--------------------------	-----------

- (UHD 방송프로그램 정의) 순차주사 방식으로 주사선수가 2,160, 주사선에 포함된

화소수가 3,840(이하 '4K'라고 한다) 이상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으로, 단위 방송

프로그램의 50% 이상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의미함	
--------------------------------	--

- (편성실적 산정) 본방(초방) 또는 순환(반복)방송에 관계없이 방송시간 인정

- 단, 순환(반복)방송의 경우, 전체 방송시간의 30%만 인정

- (편성실적 가중) 주시청시간대\* 편성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시간의 150% 인정

\*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19:00-23:00(평일) / 18:00-23:00(주말)

- (예외 인정) 재가공 프로그램(업스케일링/리마스터링)의 경우, 업스케일링\*은 인정

하지 않으며, 리마스터링\*은 전체 방송시간의 30%만 인정

\* 업스케일링: 영상의 화소 수를 단순 증가시키는 작업

\* 리마스터링: 영상 화소 수 증가, 화질 보정, 프레임 보간 영상 생성, 노이즈 제거,

컬러 그레이딩 등의 과정을 포함하는 화질개선 작업(4K로 촬영하여 HD로 다운

컨버팅한 프로그램의 화질복원 작업을 포함)

※ 본 세부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방통위 주무부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평가 기준

- 허가조건에 따른 연도별 UHD 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19년 15% 이상('20년 이후의 경우, 허가조건에 따라 만점 비율이 달라  
짐)

<표 4-4>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방식

UHD	15%	13.12%	11.25%	9.38%	7.5%	5.63%	3.75%	
1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1.88%				5				
프로그램	~	~	~	~	~	~	~	
이상								미
만								
편성비율	13.13%	11.25%	9.38%	7.5%	5.63%	3.75%	1.88%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지상파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15점	12점	9점
6점		경우, 프로그램	0점					
TV-중앙								
* 편성 실적이 0%인								
구현				내의	정치,	사회,	문화를	다룬
7) 지역성 구현								

○ 지역성 구현

－ 지역성

그램을 의미하며, 편성시간 량 산정 시, 본방(초방) 또는 순환방송에 관계없이

전체 방송시간 인정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평가 기준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의 최고 편성 실적\*을 기준으로 9등급 평가

\* 3시그마(평균\*3표준편차) 극단치 제거

<표 4-5>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평가 기준

평가등급의 비율(9등급)	배점
87.5% 이상	40점
75% 이상 ~ 87.5% 미만	36점
62.5% 이상 ~ 75% 미만	32점
50% 이상 ~ 62.5% 미만	28점
37.5% 이상 ~ 50% 미만	24점
25% 이상 ~ 37.5% 미만	
12.5% 이상 ~ 25% 미만	
12.5% 미만	

0%	

8)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실적 평가(SO)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실적 평가 배점방식
  - 등급별 구간을 기존 20%에서 10%로 축소

<표 4-6>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실적 평가 배점방식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실적	배점
80% 이상	50점
70% 이상 ~ 80% 미만	50점
60% 이상 ~ 70% 미만	40점
50% 이상 ~ 60% 미만	30점
40% 이상 ~ 50% 미만	20점
40% 미만	10점
40% 미만	5점
* 편성 실적이 0%인 경우, 0점 처리	
8)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 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 외주제작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적정성에 대한	5등급 평가
- 표준계약서 내 외주제작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관련 사항	명시에 따른 평가

<표 4-7> 외주제작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평가 기준

구분	내용	배점
외주제작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확인	명시되어 있음 또는 확인서* 제출	7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또는 확인서* 미제출	0점
* 외주제작인력의 상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확인했다는 서류를 의미하며, 서류 작성의 주체는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 모두 가능		
○ 방송사·외주제작사와 독립창작자간 소통·협력을 위한 상생협의체 제도 등의 구성	대안 평가	
	및 운영에 제도라 함은 방송사와 구성된 일체의	
- 상생협의체	회의체 제도를 의미하며, 명칭은 방송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해당 협의체의 운영 결과*	를 입증할 수 있는 실적(회의록 등) 제출	





\* 운영결과는, 운영결과의 정리, 전기 논의결과의 반영, 차기 일정 등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수한 것으로 보며, 동일 사업자  
군의

우수 사례를 기준으로, 그 정도에 대한 상대적 평가 실시(차등 점수 부여)

<표 4-8> 상생협의회 제도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점수 기준

상생협의회 제도의 구성 여부(5점)	제도의 운영결과(3점)			
	운영결과 上	운영결과 中	운영결과 下	운영결과 없음
5점/0점	3점	2점	1점	0점

9)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	상품* 내에서 공공, 다양성 평가				

○ 디지털 기본형

- 이 때,

- '18년 11월 기준, 공공, 공익, 장애인복지, 지역 채널의 수는 총 16개\*로,  
지역

채널은 1개 이상의 복수를 운영하더라도 1개로 산정

\* 공공채널 3개(KTV, 국회방송, OUN), 공익채널 11개(다문화tvM, 육아  
방송, 한국

직업방송, RTV, 사이언스TV, 아리랑TV, 예술TV Arte, MBC Net, EBS  
플러스 1,

2, English), 장애인복지채널 1개(복지TV), 지역채널

<표 4-9> 공공, 공익, 복지, 지역 채널의 수에 따른 평가

SO	개수		평가점수
	원1개	원2개	
16개	15개		20점
15개	9개	이하	17점
14개	13개		14점
13개	12개		11점
12개			

11개

10개 이하

<표 4-10> 전체 채널 수 대비 공공, 공익, 복지, 지역 채널의 수에 대한 비율 평가

개수	평가점수
12% 이상	10점
10% 이상 ~ 12% 미만	6점
10% 미만	2점


## 제 2 절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 검토

- 세부기준(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 수렴 기간: 11월29일(목) ~ 12월6일(목)
- 의견 제출 사업자: 총 14개 사업자

### □ 사업자 의견

#### 가. 지상파 TV

##### 1) KBS

- ‘자체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항목 관련
  - (현황) 자체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항목 중 일부 문구 삭제

○ 양질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 장려를 위하여 전국에 방송된 지역 자체제작물 또는 지역

공동제작물은 편성시간의 50%를 가산하여 인정함

○ 지역 자체제작물 편성시간으로 산정되는 지역 공동제작물의 경우도 전국에 방송되었을 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함

지 (사업자 의견) 편성을 지역방송사 제작진의 제작의욕과 지역민들의 유  
고취시킬 뿐 아니라, 지역 간 소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실제로 항목이 사라진다면 지역MBC나 지역민방의 고품질 프로그램

자극심을

있는데, 해당

제작 유인이 사라지게 될 것임. 따라서 해당 가산점을 삭제할 것이 아니  
라

오히려 MBC, SBS 중앙방송사에 지역사 프로그램 전국방송을 독려하는  
것이 올바른 지역방송 정책 방향이라고 보임”

사업자 - (검토의견) 지역 방송사 제작진의 제작의욕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문구 유지



○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항목 관련

- (현황) 건당 감점(언중위 직권결정 4점,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 보도 판결

6점,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명예훼손 판결 6점)

- (사업자 의견) 1) 방송된 시점과 감점 시점 간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항목 삭제,

2) 중요도면에서 직권결정의 감점 수준은 보다 완화(2점)

- (검토의견) 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세부기준 개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2) MBC

○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항목 관련

-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프로그램 질 평가' 항목의 비중 높아짐

- (사업자 의견) 개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 KI조사의 개선 작업 등 후속조치 필요

“현행 KI조사는 본방 프로그램 수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지상파와 중편을

동일 잣대로 평가하고, 채널 평점을 산출하는 근본적 결함을 안고 있음”

- (검토의견) 방송평가 세부기준 개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나, 평가항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과(편성평가정책과)와의 연계 검토

○ 행정제재 감점 관련

- (현황) 과태료 등 감점기준 이전 세부기준과 동일

- (사업자 의견) 지상파TV의 전체 총점이 낮아짐으로 인해,, 한 건당 감점 비중은

상대적으로 커짐. 따라서 건별 감점 점수 축소 바람직

- (검토의견) 기존 총점이 서로 다른 사업자에게도 모두 동일한 감점 비중을 적용

했던 바, 감점 비중이 달라졌다고 해서 감점기준을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관련

- (현황) 재허가 조건('19년 15%) 만점 기준 제시
- (사업자 의견) 서비스 도입 초기라는 점을 감안, 평가기준 완화 또는 재허가

조건 준수 시 가점 부여 방식으로 변경

- (검토의견) 재허가 조건의 완화 사례\*가 없으며, 조건의 준수는 가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준의 완화는 적절하지 않음

\* 재허가 조건 미준수시 시정명령 -> 과징금의 순으로 이어짐

## 나. 종편PP

### 1) TV조선

○ '프로그램 수상실적 종합 평가' 항목 관련

- (현황) '프로그램 수상실적 종합 평가' 항목의 비중 높아짐

- (사업자 의견) 항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구체적인 시상별 점수표 공개

- (검토의견)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 의견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시상별 점수표 공개

○ '우수 사례 기준, 상대 평가' 관련

- (현황) '공정정보 위원회 운영', '시청자 의견반영', '상생협업체 운영' 등에서 동일

사업자군(群)의 우수 사례를 기준으로 상대평가

- (사업자 의견) '우수 사례를 기준으로, 그 정도에 대한 상대적 평가 실시(차등

점수 부여)'의 의미가 불분명함

“우수사례를 기준으로 모든 사업자가 비슷하게 잘한 경우 모두 같은 점수를 부여한다면 상관없지만 굳이 동일 사업자 안에서 큰 차이도 없는 데

점수가 차등적으로 부여된다면 불합리함”

- (검토의견) 상대평가 도입 취지가 점수의 강제적인 차등 부여에 있지 않으며,

우수사례를 기준으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수준이면, 모두 같은 점수를 부여할



계획

-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 노력 평가' 관련
  - (현황)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 (사업자 의견) 제출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함
  - (검토의견) 세부기준(안)에 따르면, 표준계약서 상에 내용을 담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제출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한 수준

## 2) 채널A

- '우수 사례 기준, 상대 평가' 관련
  - (현황) '공정정보도 위원회 운영' 등에서 '우수 사례 기준, 상대평가'
  - (사업자 의견) 회의체 운영, 증빙 제출의 여부로만 평가(절대평가)

"각 사업자마다 결과자료를 정리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다른 사업자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검토의견) 현행 항목의 배점이 높아진 것은 애초부터 상대평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는 방송평가 세부기준 논의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 운영 여부로만 평가하는 방식은 사업자간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아, 배점을 낮추는 추세

## 3) MBN

- 방심위 감점과 언중위 감점의 중복 규제 가능성
  - (현황) 방심위 감점, 언중위 직권결정 감점
  - (사업자 의견) 동일 사안으로 방심위/언중위 감점을 받는 경우, 중복 규제
  - (검토의견) 동일 내용으로 방심위와 언중위의 감점 모두 받을 수 있으나, 두 기관의 성격\* 자체가 달라, 중복규제라고 보기 어려움

\* 방심위: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주의/경고 등)

상 \* 언중위: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반론보도/정정보도/추후보도/손해배

○ 재난방송 평가 관련

- (현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방송 실적 평가
- (사업자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범위 불명확
- (검토의견) '재난'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며, 방통위

역시

이에 따라 재난방송 실시를 요청하고 있어, '재난'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SO/위성

1) 티브로드

○ '자체심의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평가' 관련

- (현황) '전담부서 설치'(5점), '제작진 참여'(5점), '사전지적 비율'(10점) 평가

- (사업자 의견) 다른 사업자에게 있는 '제작물 심의비율' 평가 추가

- (검토의견) '제작물 심의비율 평가'는 평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으로, 다른

사업자의 배점을 점차 낮추는 추세여서, 평가항목을 별도로 추가하기 어려움

○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평가' 관련

- (현황) '재난방송 편성실적'(20점), '재난방송 매뉴얼'(10점) 평가

- (사업자 의견) 다른 사업자에게 있는 '관련 인력운영', '교육실적' 평가 추가

- (검토의견) 특정 사업자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해당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의 의견을 예상하기 어려워, 평가항목을 추가하기 어려움

※ 신설항목이라는 점을 감안, 추후 사업자 의견을 반영하여 항목 변경 가능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 관련

- (현황) 80% 만점으로 10% 구간 6등급 평가(기존 20% 구간 5등급

평가)

편성 실적	개정안
80%이상	50점
70% 이상 ~ 80% 미만	40점
60% 이상 ~ 70% 미만	30점
50% 이상 ~ 60% 미만	20점
40% 이상 ~ 50% 미만	10점

40% 미만	5점
- (사업자	
- (검토의견) 기존 20% 구간을 10%로 조정한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나친
것으로	

편성 실적	개정안
80%이상	50점
65% 이상 ~ 80% 미만	40점
50% 이상 ~ 65% 미만	30점
35% 이상 ~ 50% 미만	20점
20% 이상 ~ 35% 미만	10점
20% 미만	0점

## 2) 스카이라이프

### ○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평가' 관련

- (현황) SO/위성 동일 비교 평가 대상 군( 群 )
- (사업자 의견) 지역보도 가능한 SO 지역채널과는 달리 위성방송 직사

채널은

보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막방송 실적만을 기준으로 평가

- (검토의견) 기본적으로 SO와 위성은 자막방송 송출 실적으로 평가할

계획\*

\* 자세한 평가방식은 과기정통부 담당부서와 협의

○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 관련

- (현황) '디지털 기본형 상품 전체 채널 수 대비 공공, 공익, 복지, 지역 채널의

수에 대한 비율' 평가(12% 이상 만점)

- (사업자 의견) 스카이라이프의 최저 티어 상품의 채널수(157개)는 공공, 공익, 복지,

지역 채널을 모두 구성(15개)하여도 10% 미만(최저점) 평가되어, 기준 조정 필요

- (검토의견) 사업자 의견을 수용하여, '디지털 기본형 상품의 채널수가 100개를

넘는 경우, 100개를 기준으로 비율을 평가한다'는 단서 조항 삽입

라. 보도PP

1) 연합뉴스TV

○ '방송콘텐츠 투자 평가' 관련

- (현황) 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액 평가

\* 투자액은 사업자 제출자료와 재산상황공표집 금액 중 작은 수치 사용

- (사업자 의견) 명확한 평가 기준 제시(ex, 채널 단위 vs 법인 단위)

- (검토의견) 사업자 의견을 수용하여, 명확한 기준(법인 단위 - 재산상황공표집

금액) 명시

마. 홈쇼핑PP

1) 현대홈쇼핑

○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평가' 관련

- (현황) '재난방송 편성실적'(15점), '재난방송 매뉴얼'(5점) 평가

- (사업자 의견) 실시간 자막방송 대신 SB(Station Break - 중간광고)시간 실적 인정

- (검토의견) 재난방송의 취지가 실시간에 있다는 점을 감안, 실시간 자막방송

대신 SB 시간 재난방송 실적 인정 어려움



- '방송콘텐츠 투자 평가' 관련
  - (현황) 지상파/PP사업자(중편, 보도, 홈쇼핑) 동일 비교 대상 군(群)
  - (사업자 의견) 홈쇼핑PP사업자끼리만 동일 비교 대상 설정
  - (검토의견) 비교 대상을 지금보다 세분화하는 데는 사업자간 다양한 의견  
개진이 가능해,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관련
  - (현황) 구제조치 사항 건수에 따른 평가
  - (사업자 의견) '소비자 피해구제 합의율' 평가 추가, TV홈쇼핑/데이터  
방송 경영  
사업자의 경우, 법인단위 합산이 아닌 채널별 구분 필요
  - (검토의견) '소비자 피해구제 합의율'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의견이 다  
양할 수  
있어 추후 검토하되, 경영 사업자의 법인단위 합산을 채널별로 구분하  
는 것은  
실무적으로 가능\*  
\* 세부기준에 관련 사항 명기 가능

## 2) NS홈쇼핑

- '자체심의/허위과장방지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평가' 관련
  - (현황) '허위과장방지 관련 자율규제 제도\* 구축 및 운영' 평가  
\* 기존 시청자위원회와는 달리 허위과장 이슈를 다루기 위해 방송사 내  
부에 별도  
구축된 제도로, 방송사 내부 전체 구성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균형 있게  
논의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함
  - (사업자 의견) '허위과장방지 관련 자율규제 제도'에 관한 설명 보완:  
'자율규제  
제도'를 '자율규제 조직 또는 회의체'로 구체화하고, '내부 전체 구성원  
'을 '방송사  
구성원'으로 수정
  - (검토의견) 사업자 의견을 수용하여, 제도를 '조직 또는 회의체'로, '내

부 전체

구성원'을 '내부 구성원'으로 수정

### 3) GS홈쇼핑

- '방송콘텐츠 투자 평가' 관련
  - (현황) 지상파/PP사업자(중편. 보도, 홈쇼핑) 동일 비교 대상 군(群)
  - (사업자 의견) 홈쇼핑PP사업자끼리만 동일 비교 대상 설정
  - (검토의견) 비교 대상을 지금보다 세분화하는 데는 사업자간 다양한 의견 개진이 가능해,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 필요
-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평가' 관련
  - (현황) '재난방송 편성실적'(15점) 평가 시 자막방송은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평가방식 결정
  - (사업자 의견) 자막 방송 송출의 세부기준 확정
  - (검토의견) 자막방송 송출 평가방식은 추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검증 필요)

### 4) 신세계TV홈쇼핑

-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평가' 관련
  - (현황) '재난방송 편성실적'(15점), '재난방송 매뉴얼'(5점) 평가
  - (사업자 의견) 의무사업자가 아닌 홈쇼핑 사업자도 재난정보 수신 확대
  - (검토의견) 재난정보 수신 확대 가능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추후 협의

### 5) 쇼핑엔티

- '자체심의/허위과장방지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평가' 관련
  - (현황) '허위과장방지 관련 자율규제 제도\* 구축 및 운영' 평가
    - \* 기존 시청자위원회와는 달리 허위과장 이슈를 다루기 위해 방송사 내부에 별도 구축된 제도로, 방송사 내부 전체 구성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균형 있게

논의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함

제\* - (사업자 의견) '허위과장방지 관련 자율규제 제도 구축 및 운영평가 삭

\* 기존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고객평가단과 역할이 중복

운영이 - (검토의견) 허위과장 이슈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별도 조직 구성 및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자 의견 수용 어려움

○ '방송콘텐츠 투자 평가' 관련

- (현황) 지상파/PP사업자(중편, 보도, 홈쇼핑) 동일 비교 대상 군(群)

- (사업자 의견) 홈쇼핑PP사업자끼리만 동일 비교 대상 설정

의견 - (검토의견) 비교 대상을 지금보다 세분화하는 데는 사업자간 다양한

개진이 가능해,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 필요

바. 지상파R

1) TBN교통방송

○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평가' 관련

- (현황) '재난방송 편성실적'(25점) 평가

- (사업자 의견) 재난발생 빈도의 지역 차이 반영

\* 지역별 방송국 분류, 지역별 재난 방송편성 실적 반영

- (검토의견) 수중계가 없는 독립지역방송사의 경우, 재난방송 건수의 차이를 반영

하여 이미 가중치 적용하고 있음



○ '재무건전성 종합평가' 관련

- (현황)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증가율 평가
- (사업자 의견) TBN은 수지차보전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타 방송사와의 평가 부적절
- (검토의견)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법인 매출액 등 재무건전성 평가를 위한 모든 자료 산출 가능

○ '경영투명성 종합 평가' 항목 관련

- (현황)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 있음' 평가
- (사업자 의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사위원회/상근감사 신설 어려움(기획재정부에서 금지)
- (검토의견) 사업자 의견을 수용,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세부항목 평가 제외





# 제5장 결 론

## 제 1 절 정책적 제안

### □ 주요 개정사항

<매체특성 반영 확대 및 평가체계 객관성 확보>

○ 법령 위반 등 감점항목의 배점방식 개선

- 법령 위반 등 기본점수(배점) 부여 후 위반 건당 감점으로 평가되는 항목의 경우,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이를 총점에서 직접 감점

○ 사업자군(群)별 총점, 영역/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 감점제도 개선에 따라 사업자군별 평가항목 수, 기존 총점 차이, 평가항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점을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우선순위의 재설정에 따라 영역별 및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평가기준 및 방법의 합리적 개선>

○ 재난방송 평가방식 개선

- 사업자별 편성실적 차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군(群)을 설정하고, 현행 5등급 평가를 9등급으로 세분화

○ 장애인 고용 평가방식 개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는 2배 가산하여

장애인 고용비율 산정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을 평가하는 기준을 법령에 따라 현행

2.5%보다 상향 조정('19년 이후 3.1%)

○ 방송기술 투자 평가방식 개선

- 모든 사업자에게 평가적용이 곤란한 세부 평가척도인 '방송기술 관련 투자액 대비

인증제품 투자비 비율' 항목 삭제

○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방식 개선

- 보도분야는 현행 평가기준 적용 시 사업자별 평가점수의 편차가 없어, 평가항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시청시간대 보도분야 편성비율 축소(42%→40%)

○ 외주제작시장 표준계약서 적용대상 명확화

- 공정거래 질서 확립 관련 평가항목의 세부 평가척도인 '표준계약서 활용의 적정성'의

기존 적용대상 사업자(지상파TV 3사, 종편PP)에 'EBS'를 추가 포함하여 평가

○ 관계법령 준수 평가의 제재조치 대상기관 확대

-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의 경우,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재조치를 추가 포함하여 평가

<환경변화 적극 대응>

○ 지상파 · 종편PP, 외주제작시장의 상생협력 강화 평가 신설

-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에 대한 안전 강화 및 방송사 · 외주제작사와 독립 창작자 간

상생 강화를 위해, '상해 · 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와 '상생협업체 운영' 등을 기존

평가항목에 통합 · 반영

○ 지상파,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신설

- UHD 프로그램 본방송이 시작됨에 따라('17. 5월 지상파TV) 방송매체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UHD 프로그램 관련 편성 평가항목을 신설

○ 보도PP,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 신설

- 방송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위해 보도PP에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항목 신설

○ SO· 위성, 재난방송 편성 평가 신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 의무편성사업자인 SO와 위성에 대한 재난방송

편성 평가항목 신설

○ 홈쇼핑PP,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 신설

- 개정된 방송법(17. 3. 14.)에 따라 시청자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홈쇼핑 PP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항목 신설



## 제 2 절 기대효과 및 한계

○ (기대효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일차적

으로 평가규칙을 개정하고, 이차적으로,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 제고 유도

- 현행 방송 평가제도 기준의 실효성/타당성 검증 및 개선안 제시

- 개정 규칙에 따른 평가척도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규제 합리성 확보

-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방송평가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 제고

- 방송평가 결과를 통한 각 사업자들의 방송프로그램 품질 개선 유도

○ (한계) 감점제도 전환에 따른 총점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체 간 상대적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 항목 수가 적은데도, 총점을 더 낮추지 못한 사업자군도 존재.

추후 총점 조정을 통해 배점 배분의 합리성 제고 필요





## 참고문헌

강남준(2004), 현행 방송평가제 개선연구, 방송연구 겨울호, 33-61.

권호영 · 하주용(2010),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평가규칙 개정안 마련 연구,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2017. 11. 27), 제41차 회의- 속기록(2017. 11. 27.(월))

방송통신위원회(2018. 11. 28.),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성육제(2012), 방송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성육제(2015), 방송매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평가지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주영호(2005), 방송평가규칙 개정안 개선 아닌 개악, 방송문화 제289호, 2-5. 한국방송협회.

---

---



[부록 1]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1.28 전체회의 의결, 12.5 홈페이지 공고)

1. 개정이유

○ 변화된 방송환경 하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매체별

특성 반영 확대, 평가체계의 객관성 확보, 평가기준 및 방법의 합리성 강화 등을 위해

평가항목 및 척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반 등 감점항목의 배점방식 개선

법령 위반 등 기본점수(배점) 부여 후 위반 건당 감점으로 평가되는 항목의 경우,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이를 총점에서 직접 감점

나. 사업자군(群)별 총점, 영역/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감점제도 개선에 따라 사업자군별 평가항목 수, 기존 총점 차이, 평가항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점을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우선순위의 재설정에 따라 영역별 및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다. 재난방송 평가방식 개선

사업자별 편성실적 차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群)을 설정하고, 현행 5등급 평가를 9등급으로 세분화

라. 장애인 고용 평가방식 개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는 2배 가산하여

장애인 고용비율 산정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을 평가하는 기준을 법령에 따라

현행

2.5%보다 상향 조정('19년 이후 3.1%)

마. 방송기술 투자 평가방식 개선

모든 사업자에게 평가적용이 곤란한 세부 평가척도인 '방송기술 관련 투자액 대비

인증제품 투자비 비율' 항목 삭제

바.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방식 개선

보도분야는 현행 평가기준 적용 시 사업자별 평가점수의 편차가 없어, 평가항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시청시간대 보도분야 편성비율 축소(42%→40%)

사. 외주제작시장 표준계약서 적용대상 명확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관련 평가항목의 세부 평가척도인 '표준계약서 활용의 적정성'의

기존 적용대상 사업자(지상파TV 3사, 종편PP)에 'EBS'를 추가 포함하여 평가

아. 관계법령 준수 평가의 제재조치 대상기관 확대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의 경우,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재조치를 추가 포함하여 평가

자. 지상파 · 종편PP, 외주제작시장의 상생협력 강화 평가 신설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에 대한 안전 강화 및 방송사 · 외주제작사와 독립창작자 간

상생 강화를 위해, '상해 · 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와 '상생협업체 운영' 등을 기존

평가항목에 통합 · 반영

차. 지상파,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신설

UHD 프로그램 본방송이 시작됨에 따라('17. 5월 지상파TV) 방송매체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UHD 프로그램 관련 편성 평가항목을 신설

카. 보도PP,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 신설

방송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위해 보도PP에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항목 신설

타. SO · 위성, 재난방송 편성 평가 신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 의무편성사업자인 SO와 위성에 대한 재난방송

편성 평가항목 신설

파. 흡쇼핑PP,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 신설

개정된 방송법('17. 3. 14.)에 따라 시청자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흡쇼핑PP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항목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해당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8-81호

방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방 송 통 신

위원회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52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5조 제1항에 따  
른 별표의

개정사항은 2020년에 실시하는 2019년도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한  
다.





[별표]

1.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 - 중앙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700점)

① 내용영역(280점)

평가항목	배점 (280)	평가척도
※ 평가대상: 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65	방송사업자 중 네트워크 본사(KBS, MBC, SBS)

평가

평가항목	배점	자율 평가	규제 등	을 평가
		수상실적 종합	가	를
자체심의 및 공정성	35	자율 평가	가	를
규제 65 담당 여부, 집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공정성	35	자율 평가	가	를
제도 운영 종합	35	자율 평가	가	를
프로그램 관련	35	자율 평가	가	를
평가	35	자율 평가	가	를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35	자율 평가	가	를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30	자율 평가	가	를
운영 현황 종합	30	자율 평가	가	를
시청자 의견반영	30	자율 평가	가	를
배점	(270)	자율 평가	가	를
② 편성영역(270점)	- 재난	자율 평가	가	를

평가항목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중	9등급 상대 평가
합 평가	55
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

비

어린이 프로그램

50 편성 평가		편성실적을 8%를 만점으로 9등급
	—	_____
- 90	—	_____

평가항목 배점  
(270)

평가척도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

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4%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25점)

- 자막방송 편성비율

장애인 시청지원 평가	50 - 「장애 - 화면해 프로그램 편성	실방송 인 편성	편성비율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 평가하 고시」 ※ 평가	유형별 되 구체 에 따른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9등급 적인 사항은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평가	30 평가 - 방송분 야(보도 프로그램	대상: 자 사업자 아(보도 프로그램	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 40% · 오락 60%) 편성비율 평가 편성실적 등 평가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 UHD ※ 평가	대상: U 위원회	프로그램 본방송 개시 방송사업자 운영, 시청자위원 만족도 등 평가
시청자위원회 운영 종합 평가	25 - 시청자 및 결과		
비상업적 공익광고 평가	편성 평가 10 -	및	편성시간대 등 평가
③ 운영영역(150점)			
평가항목	배점 (150)		평가척도
	-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40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

지

평가	30	운영 등 평가	MBC, SBS, EBS
서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	25 - 운영 평가 - 장애인 활용 상태/허가	※ 부	체비율 등 평가 의한 장애인 고용 합수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20 의무 평가		
협의체 상 공정거래 질서 평가	확립 노력	고용 시 만점 부여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 91 -		

\_\_\_\_\_

\_\_\_\_\_

\_\_\_\_\_

\_\_\_\_\_

평가항목 배점 평가척도  
 (150)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 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0

부여	15 교육, 평가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직무와 연관 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15 - 내부 회계 인력 제도 등 평가	5 방침	교육비/매출액
인적자원 개발 투자	- 개인 누설	적절성 종합	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개인정보보호의 평가			
④ 감점	- 방송법 제32 시 감점	- 조 제33조	평가척도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과를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③ 해당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편성	방화의로라(합) 5천만원 초과 책임자 해당 조치 관련 규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점/	유형의 위반이 방송 심의에 ' 제3절의2 제 심의에 관한 위반의 경우	방송심의규칙과 방송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게재한 경우 3회 이상 동일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규정 중 ' 제1절 공정성 ', ' 제2절 객관성 ' 등에 대한 방송 ' 규정 위반과 ' 선거방송 '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없이 부과된 제재 감점하지 않음)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평가	조치가 내려진 방송법 제73조 판매한 경우로 조치의 경우 - 92 -	규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
	준수 여부 방송심의에 관한	

평가항목

평가척도

권 결정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 언론중재위원회의

회의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관련 결정 평가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6점 감점(단, 동일

것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
방송편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p>조의5까지의 을 감점함) 연간 제재조치 제108조에 의 만원 이하의 부과시 22.5점 고시 위반의</p> <p>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시 감점: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시 과징금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p>
<u>평가</u>	<p>조치 건당 방 시정명령 8점/ 만원 초과시 과 중복의 제재조</p> <p>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 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p>
<u>방송법,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평가</u>	<p>- 공정거래위원</p> <p>- 방송통신위원</p> <p>명령 8점/ 5천 초과시 과징금 중복의 제재조</p> <p>회의 제재 조치사항 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p> <p>제재조치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p>
※ 항목별 감점의	<p>등 관계법령 결과를</p> <p>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p>





2.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 - 지역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600점)

① 내용영역(180점)

평가항목	배점 (180)	평가척도
상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5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평가

의 자체심의 및 공정성	40	자 평가 등 평가	편성시간대, 평가원
제도 운영 종합 평가	40	방송 종합 평가	취송률, 편성 여부 및 절차,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현황 종합 평가	40	적절 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시청자 의견반영	배점 (270)	제작 편성	평가척도 비율 평가

② 편성영역(270점)

지역	70	9등급	평가
편성	평가	MBC:	자체제작비율 15%를 만점으로
를 만점	민방(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	9등급 방송사업자 제외)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및 지역성 구	9등급 지역민방: 20%를 만점으로	지역총구: 자체제작비율 10%	
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 지역	등급 평가	편성비율 평가
	- 재난	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 실적
	60	방송/예매	매 가
	등인원	등급 상대	설
	※ 상대	평가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재난방송 편성 및  
종합 평가

---

---

평가항목  
배점  
(270)

평가척도

-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25점)
-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25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

애인

	※	고용	만점 부여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장애인 시청지원 편성 평가	50 - 여성 프로그램	3.1%	법령에 따라 '19년 종업원수
시청자위원회 운영 합 평가	30 - 시청자 평가	자위원회 비율 및	운영, 시청자위원 만족도 등 편성시간대 등 평가
비상업적 공익광고	10 - 편성 평가 : 여성 부여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 치
③ 운영영역(150점)	배점		평가척도
평가항목	35 - 유동 평가	비율, 부	등 평가

재무의 건전성 종합

- 방송대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

율

방송콘텐츠 및 방송 및	20 - 내부 종합평가 - 직무 기술 평가	회계 관 와 연관 교육, 방 교육, 상 기술교육 등에	리제도 등 평가 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 종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20 평가 유지보수 대한	평차자 등 교육비, 인고용촉 의무 대상	평가 교육비/대출액 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20 고용 평가 장애	인 고용	시 만점 부여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항목  
배점  
(150)

평가척도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

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

년

이후 3.1%

장애인/여성 고용 편수

20

가중치	제작·유통상	부여		
		- 개인		
방송프로그램 등의 공정거래 질서		10 적절성 종합 평가	관리 공개 누설	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취급 개인 평가		
개인정보보호의	확립 노력 평가			
④ 감점		- 방송법 제3 시위반 시	제3 감점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

평가항목

치	의 관계자에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
또는 그램	결과를 기준으로 경우 ②점/ ③+④ / ⑦ 방송법 중징금 4점/ ④	제재조치건당 ① 주의 1점/ ②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과 천만원 초과 유형을 방송심 방송심의에 관 규정, 방송법 구분하여 3회 경우 3회 이 관한 규정 중 의2 재난 등에 심의에 관한 그 외 위반의 - 96 -
방송심의의 관련 제규정	경우 3회 이 관한 규정 중 의2 재난 등에 심의에 관한 그 외 위반의 - 96 -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준수 여부 평가	

평가항목

평가척도

감점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제7

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

감점

사의 귀책사유 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의

언론중재위원회  
결정 평가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	
	위법행위로 인하여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
	시 감점: 연간 건당 방송법	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
	시정명령 12점 / 5천만원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 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준수 여부	
	연간 제재조치 송법 제108조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
	8점/ 5천만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초과의 과징금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대해 중복의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감점함)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 공정거래위원	회의 제재 조치사항
	- 방송통신위원	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
	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과태료 부과
	시 4점/ 시정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
	과시 10점/ 5천	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
	점(단, 동일사	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등 관계 법령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 항목별 감점의



### 3. 지상파방송사업자(라디오방송) - 중앙/지역

####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300점)

##### ① 내용 및 편성 영역(150점)

- 적용 대상: 독립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TV · 라디오 겸영사업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척도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150)	재난방송/예방 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 실적
종합 평가	60	등 9등급 상대 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척도
종합 평가	60	등 9등급 상대 평가
상대 프로그램 관련 수상 실적 종합 평가	35	35 방송 종합 평가에 따른 수상 실적의 점수된 시청자 의견차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담당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등을
시청자 의견반영 및 결과 종합	20	심의
자체심의 운영 평가		
TV · 라디오 겸영사업자의 라디오		TV 평가결과를 적용

##### ② 운영영역(150점)

- 적용 대상: \_\_\_\_\_

※ 지상파

평가항목	배점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종합	25	내부 종합평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와 연관 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
기술	25	기술 평가 교육 대비 향상 콘텐츠 투자비율 등에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30	등을 평가
및	98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영 평가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인적자원 개발 투자

---



평가항목  
배점  
(150)

평가척도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25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

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

자가

	25 평가	3.1%	법령에 따라 '19년
애인	- 여성	—	종업원수
장애인/여성 고용	10 - 공경		
	- 개인		
	5 적절성 종합 평가	거래 가이	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
	취급	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방송프로그램 등의	개인	방침 공개	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정거래 질서 확립	평가	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	부여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개인정보보호의	제작·유통상 공		
	노력 평가		
③ 감점	- 방송법 제	평	가척도
	고시위반 시	제3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감점	

평가항목

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

또는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① 주의 1점/ ② 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그램의

중처 ⑦ 방송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재조치 8 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5천만원 초과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반유형을 방송의 과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 선거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 선거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준수 여부 평가

- 99 -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

평가항목

평가척도

절의  
심  
고,  
대해

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  
2 재단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제7항을  
언론중재위원회  
결정 평가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평가  
방송법,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평가  
※ 항목별 감점의

위반하여  
권 결정 또는  
하고, 위주제작성  
허위사실로 인  
훼손 판결시  
재제조치가 내  
- 방송법 제4조,  
귀책사유 없이  
않음)  
및 법원의 오보관련  
제76조의5까지  
감점: 연간 제  
건당 방송법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초과준수유  
방송법 제73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중복의 제재조  
- 공정거래위원  
- 방송통신위원  
조치 결과를 기  
4점/ 시정명령  
10점/ 5천만원  
(단, 동일사안  
경우 과중한  
제재조치  
제108조에  
등 관계법령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내러신 경우 과중한 것을 감  
람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관 방송법 제73조 제1항 제1항 ①  
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  
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시  
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의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회의 제재 조치사항  
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  
준으로 제재조치건당 과태료 부과시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것을 감점함)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 ① 내용 및 편성영역(200점)

평가항목	배점 (200)	평가척도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지역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30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실적 등 평가
육 실적	30	재난방송/예방 프로그램 편성실적, 교
재난방송 편성 및 종합 평가	※	평가대상 군 설정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
	- 자막	방송 편성비율
	- 수화	방송 편성비율
	- 화면	해설방송 편성비율
장애인 시청지원 편성 평가	30 - 「장정한 점으로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시청자 의견반영	20 차, 종합 평가 리의 20 편성 평가	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채널에 대한 직접제작 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종합 평가
직접/외주제작 프로그램	10	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 시상 평가 10 심의	
자체심의 운영 평가	- 적체 평가	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담당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등을
및 결과 종합		



② 운영영역(300점)

평가항목	배점 (300)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40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40	등을 평가

및	40 - 매출 평가	액 대비	수신료 배분 비율 등 평가
	선정기준 적정성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40 - 선정 기준 적정성 및 PP만족도 등 평가		
채널공급 계약 시 평가	40 적절성 종합 평가	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의	취급	방침 공개	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 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25 - 내부 종합평가	회계 관	리제도 등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 직무	와 연관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선
	기술	교육, 방	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장애인/여성 고용	25 고 평가	평가	교육비/매출액
	- 1인	인고용촉	의한 장애인
채널구성의 다양성	- 장애	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고용	인 고용	시 만점 부여
채널구성의 다양성	※ 중	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25 고 평가	용비율 평	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채널구성의 다양성	이	후 3.1%	/평균 종업원수
	- 여성	종업원수	
채널구성의 다양성	: 여	성 비정규	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
	중치	부여	지·지역 채널의 구성 등을
채널구성의 다양성	25 평가	공익·복	
	- 공공	평가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및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조치	고시위반 시 감점
②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
정도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① 주의 1점/ 그램의
프로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p>정명령 8점/ ③ 해당방송 16점/ ④ 과태료 4점/ ⑥ 시          늘 증가의 ④ 방송편성책임자, 해당 방송          조 위반으로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          감점하되, 초과외 과징금 부과시 15점          장 11점/ 준수 여부 평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          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          과부터 방송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          반의 경우 2배 감점(단,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          배 감점(단,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          가 방송법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          접광고를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없          이 부과된 경우 감점하지 않음)          - 방송된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          허위사실로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          훼손 판결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          의 제재조치가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          - 방송법 제4조,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및 법원의 오보판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p>
언론중재위원회 결정 평가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평가	<p>지          위반시 감점:          재조치 건당          시 6점/          준수 여부</p> <p>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p>



--	--

평가항목

평가척도

22.5점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위반의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

점/

평가  
10점

(단, 동

방송법,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평가

※ 항목별 감점의

5. 위성방송사업자

평가항목	평가척도
일사안에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10점/ 5천만원 (단, 동일사안 경우 과중한 과중한 것을
방송법,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평가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척도(만점 500점)

■ 평가항목 및

① 내용 및

평가항목	배점 (150)	평가척도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400	9등급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지침」에 따른다.
서		9등급
편성 평가		평가하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
만		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재난방송 편성 및  
종합 평가

\_\_\_\_\_

평가항목  
배점  
(150)

평가척도

절차,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30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직접제작 또는

외주 직접/외주제작 프로	15 심의	- 직제	상의 전담 담당여부,	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등을
및 결과				
자체심의 운영 현황	평가		—	
종합 평가	10 종합	- 시상	기관에 따	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평가		—	
② 운영영역(350점)	배점			
	(350)			
평가항목	45 - 유동	평가	비율, 부	평가척도 등 평가

재무의 건전성 종합

울		- 개인	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방송콘텐츠 및 방송	45 45	취급	방침 공	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 방송신	기술 대응	능력 평가 및 자질향상 등을
	40 - 매출	종합	수입차 등	평가 배분 비율 평가
	40 - 선정	평가	액 대비	성 및 PP만족도 평가
개인정보보호의	선정기준 적정성	기준 적정		
	35 - 내부	종합평가		
		- 직무	회계 관	리제도 등 평가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35 평가		와 연관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
채널공급 계약 시		기술	교육, 방	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평가		대환	평가	
		- 1인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 장애	인고용촉	의한 장애인
	35 고용	평가	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장애	인 고용	시 만점 부여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항목  
배점  
(350)

평가척도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

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

년

이후 3.1%

장애인/여성 고용 편수

25

가	중치 - 공공	부여 공익·복	지·지역 채널의 구성 등을
채널구성의 다양성	평가	-	
③ 감점	- 방송법 고시위반	시 감점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평가항목

조치	그림의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
②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① 주의 1점/
정 도	- 106 - 경고 2점/ ③ 해	당 방송법 제106조의 취관으로 5천만
프로	정명령 8점/ 는원중이하 4점/ ④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
방송심의 관련 제 규정	조 위반으로 점 감점하되, 제장 준수 여부 평가	방송법 제100조의 취관으로 5천만 원 초과 시 15
	방송광고 런 규칙 및 유형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결과부터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성', '제2절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
	송' 규정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
	정' 위반의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우 1.5배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
	치가 내려진	' ' 제3절의 2 재단 등에 대한 방
	작사가 방송법	'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
	간접광고를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
	없이 부과된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경우 감점하지 않음)

평가항목

평가척도

회의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

당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

4

①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	을 감점함)	
결정 평가	- 방송법 제4조, 제78조와 5년 이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복의 제재조치 건당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8조와 5년 이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제재조치 건당
에	과시 6점/ 시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시 위반의 경	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 점/ 5천만원 초과 시 위반의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것	제재조치 건 부과시 4점/ 금 부과시 10점 감점(단, 가 내려진 경	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 점/ 5천만원 초과 시 위반의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방송편성 관련 규정	- 공정거래위원 - 방송통신위원 제재조치 결과 부과시 4점/ 금 부과시 10점 감점(단, 가 내려진 경	회의 제재 조치사항 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과태료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 점/ 5천만원 초과 시 위반의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평가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평가항목 배점 평가척도  
(200)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화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40 -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

서 편성 평가	으로 애인	9등급 편성	구체적인 사항은 「장 관한 고시」에 따른다.
만점	4 - 방송 편성 평가 25	분야(보도 자위원회 비율 및	40% · 오락 60%) 편성비율 평가 운영, 시청자위원 만족도 등 편성시간대 등 평가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결과 종합 평가	- 시청 및 평가		
비상업적 공익광고	10 - 편성 편성 평가		
	배점 (150)		평가척도
③ 운영영역(150점)	- 방송	매출액 대 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평가항목

방송콘텐츠 및 방송 투자 평가 및	30 여부, 노력 평가	30 활용, 비율, 부 등 평가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운영 등 평가 등 평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25 - 유동 평가 20 - 내부 종합 평가 - 공정거래 관련 고용 장애	비율, 부 등 평가 평가 등 평가 인 및 실행계획, 표준 장애인 의무 대상 인 고용 증장애 인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시 만점 부여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가 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후 3.1%
재무의 건전성 종합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 중 20 고 평가 이	증장애 인 용비율 평 가 후 3.1%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가 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후 3.1%
장애인/여성 고용	: 여 중치 - 109 -	성 비정규 부여	평년 종업원수 /평균 종업원수 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

평가항목  
배점  
(150)

평가척도

- 직무와 연관 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신

등에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15

대하 평가

정보 개인정보보호의 종합 평가	5	취급처 개인	방침 공개 정보 누설	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	
④ 감점		- 방송법 고시위반	시 감점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평가항목

조치

②

정 또는  
로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그림의	대하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① 주의 1점/ 경 10점/ ③ 해 명령 8점/ ⑦ 중징 4점/ ④ 방 이하의 과징금
위반으로 감점하되, 10점 준수 여부 평가 심의에 관한 및 고시 위반이 반복될 방송 심의에 객관성 ‘ 위반과 ‘ 경우 2배 감점(단, 내려진 경우 방송법 제73조 광고를 판매한 부과된	단방송프로그램의 점정 수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3천만원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규정 중 ‘ 제1절 공정성 ’, ‘ 제2절 재난 등에 대한 방송 ’ 규정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 위반의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없이 경우 감점하지 않음)

평가항목

평가척도

회의

당 ①

②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결정 평가	최대치를 충족	최대치를 충족
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백한 재조치 제76조의5까지 중복지점</li> </ul>	<p>최대치를 충족</p> <p>6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 중복지점을 부과하지 않음)</p> <p>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p>
방송편성 관련 규정 여부 평가	<p>준수</p> <p>경우 연간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시정명령 8점/ 5천만원</p>	<p>재조치 건당 방송법 시정명령 6점/ 시정명령 15점/ 5천만원 하되, 방송법</p> <p>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p>
방송법,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평가	<p>동일사안에 대해 과중한 것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원</li> <li>- 방송통신위원회 조치 결과를 기준</li> </ul> <p>4점/ 시정명령 10점/ 5천만원 (단, 동일사안 경우 과중한</p>	<p>해 중복지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감점함)</p> <p>회의 제재 조치사항</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과태료 부과시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에 대해 중복지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것을 감점함)</p>
※ 항목별 감점의	<p>등 관계법령</p> <p>최대치를 충족의 10%로 설정</p>	



## 7.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분야)

###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 ① 내용 및 편성영역(350점)

평가항목	배점 (350)	평가척도
등의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율, 제도 운영 종합	70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심의의 담당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

평가항목	배점	평가척도
장예인 시청지원 편성 평가	60	편성 편성비율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 수화방송 편성비율 9등급 - 편성 -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 구체적인 사항은 「 관한 고시」에 따른다.
재난방송 편성 및 종합 평가	60	재난 방송/예방 등 9등급 상대 평가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 기관에 따 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50	수상실적 - 시상 평가 - 시청 자 의견수 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통신위원회 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 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시청자 의견반영	40	시청자 평가프 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현황 종합 평가	30	시청자 평가프 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등 평가 자위원회 운영, 시청자위원 만족도 등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합 평가		



② 운영영역(150점)

평가항목 배점 (150)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_\_\_\_\_ 35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_\_\_\_\_  
 등을 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척도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25	유지 보수 투자 등 평가
용 및	20 - 내부 종합평가	회계 관 리제도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20 평가	- 직무 와 연관 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
인적자원 개발 투자	20	교육, 방 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교육비/매출액 의한 장애인
장애인/여성 고용	20	고용 의무 대상 시 만점 부여
	※ 중 20 고 평가 이 후 3.1% - 여성 종업원수	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평균 종업원수
방송프로그램 등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10 - 공정 - 개인 10 적절성 종합 평가	성 비정규 부여 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 거래 가이 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
개인정보보호의	취급 내용 종합 평가	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누설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제작·유통상 노력 평가		







--	--

평가항목	평가척도
시 제 부과	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방송편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평가	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내려진 경우 것을 감점함)
15점	- 과징금 10만원 이하의 초과 과징금 부과 -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사항
내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과태료 부 과시 4점/ 시 과시 10점/ 점 감점(단, 동 내려진 경우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5천만원 초과 과징금 부과시 15 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과중할 것을 감점함)
방송법,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평가	등 관계법령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 흡소핑분야 ) 척도(만점 500점)
8.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평가항목 및

① 내용 및

평가항목	배점	평가척도
등의 자체심의 및 허위과 장 관련 자율규 율, 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40 - 「 프로그램 장 관련 자율규 70 정하 점의 으로 인 허위과 장 관련 자율 규제 등을 평가	편성 편성비율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 심의제재 사전지침 비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 관한 고시」에 따른다.
장애인 시청지원 편성 평가	25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화방송 편성비율 -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등 평가	
	- 115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현황 종합 평가

\_\_\_\_\_

\_\_\_\_\_

평가항목  
배점  
(200)

평가척도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25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육 실적	20		
재난방송 편성 및 종합 평가		9등급 상대 대평가는 가대상군	평가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결과 종합 평가	15	- 시청 및 자위원회 평가	운영, 시청자위원 만족도 등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5	- 시청 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② 운영영역(300점)			
	배점		평가척도
평가항목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40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비율		유지 보수 투자 등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 투자 평가 및	40	- 개인 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방송 내용	개인별,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영 누설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개인정보보호의 종합 평가	30	종합 내부 종합평가 - 직무 와 연관	평가 회계 관 리제도 등 평가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30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30	기술 대한 - 1인 인고용촉 - 장애 장애	교육, 방 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교육비/매출액 의한 장애인
장애인/여성 고용		30 고용 장애	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시 만점 부여

--	--	--

---

---

---

---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평가항목

평가척도

부과시  
 부과시  
 부과시  
 감점  
 의  
 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의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치	— 행정처분위반	회의 제재 조치사항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방송통신위원	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4점/	최대치를 초과	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사
	부과시 4점/ 시	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과태료
	부과시 10점/	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감점(단, 동일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내려진 경우	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 5천만원	과중한 것을 감점함)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준수 여부 평가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TV/ 라디오방송)	
	척도(만점 300점)	
	영역(100점)	

9.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평가항목 및

① 내용 및

평가항목	배점	평가척도
이동멀티미디어방송	25	9등급 상대 평가
편성 종합 평가	※ 상	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상대	평가	— 평가대상군 설정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종합 평가	25	평가
육 실적		- 재난방송/예방 프로그램 편성실적, 교

재난방송 편성 및  
종합 평가

---

---

---

---

---

평가항목  
배점  
(100)

평가척도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15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자체심의 운영 현황	평가		
등을 평가		-	
② 운영영역(200점)	배점 (200) 45 - 유동 평가	비율, 부채	평가척도 비율 등 평가

평가항목

재무의 건전성 종합

비율	35 - 내부 종합평가	회계 관	리제도 등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45	- 직무 등 유동 평가 대한 방송신 - 1인 당 교육비, - 유상채권 고용 장애 ※ 중 고 평가 이 - 여성 : 여 중치 10 - 공정 - 개인 취급 내용 종합 제작 · 유통상 확립 노력 평가 적절성 종합 평가 5	와 연관 교육, 방 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연속 투자 비율, 시설은 의한 장애인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시 만점 부여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가 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평균 종업원수 성 비정규 부여 거래 가이 정보 관리 방침 공 , 개인정보 평가
용 및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인적자원 개발 투자	30		
장애인/여성 고용			
방송프로그램 등의 공정거래 질서			

개인정보보호의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및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고시위반 시 감점

조치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

②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① 주의 1점/

정 도

프로

그램의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
점/ 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 능 중점 8점/ ④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단 5천만 원 이하의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 조 위반으로 초과외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 장 D111 준수 여부 평가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 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 과부터 방송 규정 위반과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5천만 원 이하의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 조 위반으로 초과외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 장 D111 준수 여부 평가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 과부터 방송 규정 위반과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방송심의의 관련 제규정 규정 위반과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언론중재위원회 결정 평가 및 법원의 오보판결 처	언론중재위원회의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 내리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초과외 과징금 부과시 22.5점

--	--

평가항목

평가척도

위반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재조

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

시 4

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시

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감점

-10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회의의 제재 조치사항

내려진

- 방송통신위원 (단, 동업사안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시 4점/ 시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과태료 부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방송법,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평가

등 관계법령

부과시 10점/  
점 감점(단, 동  
내려진 경우  
5천만원 초과 과징금 부과시 15  
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과중한 것을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부록 2]

## 방송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속기록

- 회 의 명 : 방송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 일 시 : 2018. 8. 30.(목) 14:3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발 제 자 : 성욱제(KISDI 연구위원)
- 좌 장 : 주정민(전남대 교수)
- 토 론 자 : 이정환(KBS 조사평가부장)  
                  임석봉(JTBC 정책팀장)  
                  채호석(GS Shop 대외협력부장)  
                  임성원(CJ헬로 사업협력팀장)  
                  김세옥(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팀장)  
                  하주용(인하대 교수)  
                  지성우(성균관대 교수)  
                  오광혁(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장)

## 방송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속기록

○ 좌장(주정민 전남대 교수)

- 발표를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예전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분야에, 많은 항목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방송평가 개선이 주로 항목 조정, 또 배점 조정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배점도 전반적으로 재조정했고 그리고 평가

방식이나 평가기준도 또 새롭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추가할 항목

등도 더 넣은 것 같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 여러분 느끼셨을 텐데 사업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평가항목의 척도를 달리 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안에 제기됐던 사업자 간 또 사업자 내에서 여러 가지 공정성, 형평성 이런 부분들,

또 평가의 타당성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고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신규 항목도 추가되었는데 아마 방송환경이 변함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항목들을 반영한 개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긴 합니다만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하실 말씀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수렴은 먼저 사업자들 의견부터 들어보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7시까지 의견수렴 토론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여덟 분의

토론자가 참석하셨고 또 플로어의 의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토론자들끼리는

약 7분에서 8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에게 가능하면 공평한

기회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8분이 넘어가면 중단시키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상파방송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이정환 부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환 KBS 조사평가부장

- 이정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약간 양해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KBS가 방송평가

제도개선안에 참석 문서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평가부장인데 프로그램 평가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오늘 아침에 회사 안에서 부랴부랴 모여서 협의했는데, 일단

충분한 협의가 되지 못해서 디테일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평가라는 부분, 아까 성 박사님 굉장히 오랜 어려운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라는 것이 저는 물질을 내는 작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평가라는 제도를 접근할 때 가끔 하게 되는 것이

물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나가는 것을 막는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물질을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방송평가 제도는

바라 봐야 된다, 저희 프로그램 평가도 KBS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물질을 낼

것이나, 평가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번 말을 해도 그 앞에서 수궁하는 것과

실제 운영에 들어갔을 때 차이가 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성 박사님 발제내용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처음에 눈길을

끄는 것은 제가 오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점체제가 약간 그렇게 보였습니다. 기본

점수를 주고 문제가 하나씩 날 때마다 감점을 운영하는 것이 물질을 막는 느낌이

든다, 거꾸로 물질을 막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물질을 내는 방법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 내용을 보시면 일정 부분은 가점체제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수상실적이나 그 외 디테일까지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점과 가점을 같이 운영하면서 진행하는 방식,

지금 수상실적도 2등급 포션 안에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밖으로 빠져서 감점, 가점 이런 식으로 서로 상쇄시킬 수도 있는 방향,

방송사는 콘텐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의성과 문화창달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점체제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주시청시간대 편성 균형에 관한 부분에서 집에서

보도·교육·오락으로 세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 안에서도 조식이

그렇게 세팅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국, 교양국, 예능국 이런 식으로

세팅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물길을 어느 쪽으로 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콘텐츠가 장르 융합한다고 하고, 형식에 계속 섞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균형 편성이 되려면 균형 항목들의

변화도 지금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사 같은 예능도

있고, 예능 같은 시사도 있고, 예능 같은 교양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떤 항목

으로 새로 세팅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세팅에 따라 균형, 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 장르가 융합되면서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은 교양

이다, 이 프로그램은 예능이다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

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상파 부분에서는 KBS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UHD 편성에

대한 점수에 대한 것이 방송사에게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지금 3등급에 30점대라고 봐야 하나요, 일단 정확히 수치

상으로 비중으로 보지 못했지만 과하다는 것을 전달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도 마찬가지로입니다. KBS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사의 지역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까 성 박 사님

발표하실 때도 지역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평가하겠다고, 그런데 로컬리티, 지역성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할 수 있겠습니다. KBS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때 대전에서

과학프로그램을 본사가 말 그대로 지역국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본사 수준의 제작

기지로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전에서 과학프로그램을 제작하면

그것은 로컬리티입니까? 이런 위상 정립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국을 본사 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제작기지화한다고 접근했을 때 이 로컬리티라는 부분이 거꾸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1등급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 지역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지역국을 어떤 물질을 내줄 것이냐는

접근에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KBS전주 같은 경우 <국악

마당>을 서울과 교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하면 국악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만 무엇이 로컬리티라는 부분인지 이야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침에 저희 부서에서 이야기하고 이 토론회에서 아주 디테일까지 이야기

하기에는 충분히 준비가 될 되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통위 위원님 계시고 편성정책과장님 계시고 KISDI가 있어서 제가

요청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1등급에 들어가면 방송프로그램 품질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KI지수, 저희 조사평가부가 KI지수를 KBS 내 프로그램 평가에 반영해

보려고 타 사 것 빼고 KBS 것만 로우데이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로우데이터를



KBS에 주시는 것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KI

지수의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요청하면 바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좌장(주정민 전남대 교수)

- 총 5가지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요청사항이고 4가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가점제를 검토해 보자, 장르 구분 융합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냐, UHD 방송 프로

그램 편성 평가 배점 고려해 보자,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등급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성욱제 박사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주 많을 것 같습

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JTBC 임석봉 팀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임석봉 JTBC 정책팀장

- 안녕하세요. JTBC의 임석봉입니다. 이번 KISDI에서 성 박사님께서 개선안을

발표해 주셨는데 저도 올해까지 8번 정도 방송평가에 직접 저희가 작성하고 의견

개진을 8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개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형평성이나 합리성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의견개진 했는데

굉장히 많이 향상된 안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약간 사업자 입장에서 부족하다거나 조금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우선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부항목별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총론적으로는 공개 범위 향상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 어떤 이야기나 하면 아까 KBS에서 KI지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방송평가를 제출하고 그 심사를 받은 다음에 각

사업자가 그 점수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대해 각 채점단에서 점수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의가 없다면 마지막에 전체회의 의결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각 사업자 배점 항목들을 제시해 주는데, 문제는 저희가 평가하는 항목은 굉장히

세부항목입니다. 한 분야에 5가지 정도 받는다면 실제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5가지 뭉뚱그린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 세부적인 점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가지를 제출했고 이 10가지가 다 충족하면  
만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항목이 만점됐는지 어떤 항목이 미달됐는지 알 수 없습  
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개범위를 그 사업자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제  
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사업자들 의견을 모았을  
때 기준을

이야기할 때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령 어  
떤 것이냐

하면 수상실적 평가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상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받은 모든 상을 정리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그 상이

어떤 점수가 어떻게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들 간 불  
만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각 분야, 방송국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수상하고 밝  
히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취합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보다

정보공개에서 이 부분도 기본계획을 세워주실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제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표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방송평가는 허가 사업자, 승인 사업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  
인데,

평가가 본연의 취지가 부합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사업자 간 변별력을 높이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평가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방송평가를 앞에 KBS에서 물길을 터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방송사업  
자들이

해야 할 이상적인 부분, 공익적인 부분들, 공적 책임 부분들을 가이드라인  
해 주고

그것을 제시해 줘서 방송사업자들이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해주는 것을 저  
는

‘물길’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고 방  
송사업자

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최근에

몇 년 동안 방송평가 항목이나 배점을 조정하는 것들을 보면 방송사업자  
들이 잘하

는 것, 너도나도 만점 받는 것은 다 그것을 심사항목에서 뺏니다. 그리고  
못 하는

것을 더 부각시켜서 그 부분을 확대하는데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맞는데, 그런데 어떠한 항목을 설정했을 때는 이것이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이나

방송사업자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자들이

그것을 잘하고 있으면 잘하는 대로 평가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못하고

있으면 못하는 대로 평가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들은 '다 만점

받으니까 이것은 빼', ' 못하는 것들은 더 배점을 확대해' 이렇게 변별력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허가 ·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자 입장에서 다소 불리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본연의 취지를 조금 더 생각해 주셔서

배점이나 항목 신설할 때 생각해 주시면 어떻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부 항목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감점 항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편사업자의 경우에 보면 총점 10%에 4개 항목이니까 총 감점이 240점까지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그런 사업자는 없겠지만 총점 600점 중 40%인 240점까지

감점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과중한 평가감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방송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부분은 세부 항목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재난방송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방송시간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방송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있고,

재난방송 예방교육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예방교육을

많이 하는 사업자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난

방송 편성은 편성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적기에

빠르게 얼마나 유익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단지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한 사업자를 만점으로 주고, 그렇지

못한 사업자를 감점으로 주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나? 예컨대 어느 사업자가 재난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모든 사업자가 재난

방송을 중요도에 상관없이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수준, 예를 들면 전체 평균 수준에서 그 이상을 하는 사업자

들은 모두 만점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해야 할 부분을 못 했을 때, 적정

분량을 못 했을 때 그 사업자들을 차등해서 감하는 것이 더 맞는 평가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 배점에서 보면 재난방송의 의무

방송사에 대해 규정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재난방송에 대한 공적책임을 고려하면

의무 재난 송출을 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지상파 · 종편 · 보도가 모두 중요한 사업자

입니다. 이 사업자들은 같은 배점을 두는 것이 훨씬 더 공적 책임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평가그룹을 할 때 지금은

지상파 · 종편 · 보도 이런 식으로 합쳐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KBS 같은 경우 재난 보도 주간방송사이지요. 그리고 보도채널 같은

경우 24시간 보도채널인데 이 사업자를 같이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S나 보도채널 따로 빼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KBS를 제외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같은 그룹으로 묶고 이런 식으로 전문

편성이나, 종합편성이나 또는 주간 방송이나, 아니냐를 고려해서 균을 나누는 것도

제안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시청시간대 편성시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앞에서 질문하면 답변해 주신다고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왜 보도

채널이 42%에서 40%가 됐는지, 사업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설정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청자위원회에 대해 시청자

위원 의견 반영 건이 있는데 세부 항목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은

몇 번 저희가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제도는 시청자위원들이 그 달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달에 반영했는지, 반영하지 않았는지만 방통위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그 한 달치만 가지고

의견을 반영했는지, 반영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합니다. 방송평가는 전년도 의 편성

결과를 가지고 익년도에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연도별로 방송의 특성에

따라 이번 달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3개월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의 제도는 아주 짧은 기간에 반영하는 것만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보완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영역에 대해 균형적 배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

하셨지만 첫 번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프로그램 질 평가, KI 평가에 대해

지상파는 70점에서 65점으로 낮춰졌고, 종합편성채널들은 35점에서 55점으로 늘어

났는데, JTBC 예를 들면 JTBC가 제일 좋은 점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100점 만점에

80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받는 사업자도 20점은 날아가는 점수지요.



그러면 65점이든 55점이든 사업자들이 아무리 잘 받아도 15점에서 20점은 마이

너스를 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 평가를 보면 이번에 신설된

보도PP 같은 경우 프로그램 수상실적을 새롭게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0점이었던

것을 50점으로 올려주었고, 세부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보도

2개 사업자만 평가한다면 일정 부분 다 기본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업자는 어떤 항목에서 기본점수를 가지고 가는 사업자이고 어떤 사업자는

어떤 항목에서 아무리 잘해도 마이너스를 할 수밖에 없는 약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좌장(주정민 전남대 교수)

- 토론 잘 들었습니다. 방송평가 운영방식에 대해 3가지 정도 의견 주셨고, 그리고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에 대해 5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 보도 부분 배점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욱제 박사님이 답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CJ헬로의

임성원 팀장님 의견 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원 CJ헬로 사업협력팀장

- CJ헬로 임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성욱제 박사님 중심으로 많은 분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여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문제점을 통해 그것을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히 어설폰 제가 의견을 드린

다는 것이 조금 미흡할 수도 있지만 저 역시 몇 년 동안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

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저희도 평가를 잘 받아보기 위한 노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가를 통해 저희 스스로도 성장해 보려는 고민들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토론 나오라고 하면서 천천히 처음 방송

평가를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에는 항목별로 우리 점수 높일 것만 고민했다면 다시

보니 '왜 방송평가를 할까?' 이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봤더니 자료집에 있는

것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방송의 공적 체계 확보를 위해 2000년도 통합

방송법 만들 때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두 분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길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 정도까지는 떠올

랐는데 이것이 진짜 다일까? 공적 가치와 프로그램 질적 개선 이것만인가? 바뀐

시대적 정신이 들어갈 것은 또 없을까? 지금 최근에 통합방송법도 새롭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볼 방송평가도 뭔가 달라질 것은 없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문제점 중 매체 차별적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그런데 매체를 차별 화할 때

차별을 두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이 결국 이 평가말은 바 목적과 부합 돼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대상에 대한 문제인데 저도 이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 지성우 교수님 계셔서 여쭙보고 싶은데 방송법

제31조에 방송사업자의 무엇무엇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고, 제17조

에는 재허가 · 재승인 때 참조해야 하고 심사해야 할 항목이 쪽 나열된 것 입니다.

거기에 방송평가가 있지요. 그래서인지 재허가 · 재승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방송

평가를 현재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법적 취지로는 재허가 · 재승인을 할 때는

방송평가를 심사하라는 것이지, 재허가 · 재승인 대상자만 방송평가를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고민이 필요한 것이

권리와 의무의 일치성이라고 해야 할지, 저희는 SO나 플랫폼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항목을 찾아낸 것이 수신료 배분입니다. 당연히 콘텐츠 발전을 위해 PP에게

배분이 되어야 콘텐츠에 투자하지요. 그리고 저희 평가항목은 상대적으로 사업자

안에 PP사용료를 많이 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돈을 받은 방송가

투자를 열심히 한 것과 투자하지 않은 것은 구분이 없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콘텐츠 경쟁력을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콘텐츠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면,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 PP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하는 것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사업자들이 임의적으로 평가하고

수신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평가대상에 대한 고민도

이러한 방송평가의 취지에 맞춰서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또 하나가 다 마찬가지로인데 저희도 재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재허가를

받으면 그중 40%가 방송평가점수, 직전 2개년도의 평균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목을 쪽 봤더니 내용편성, 방송평가 이번에 주신 것을 구분하면 10개 항목

중 6개가 재허가와 동일하고, 운영영역도 장애인 · 여성 평가를 구분해서 하면 13개

항목 중 8개의 항목을 재허가에서도 저희가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법령위반은

기준도 동일하고, 그러면 방송평가에서 깎이고 재허가에서 또 깎이고,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문제제기를 드린 것입니다. 다만, 고민은 만약에 재허가와

방송평가의 취지가 다르고 둘 다 반영해야 한다면 적어도 방송평가점수가중치를

고민할 때 재허가에서 하는 가중치를 고려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재허가는 5년 동안의 실적을 평가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냅니다.

그러면 재허가는 차라리 이행계획 중심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심사를 받고,

다만 붙어 있는 조건이나 이행실적은 매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방송평가 재허가 여전히 따로따로 계속 가더라도

같은 항목이지만 평가기준이 조금 상이합니다. 같은 것도 있고 상이한 것도 있고,

차라리 평가기준을 상이하게 하면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언뜻 드는 생각은 3가지지만 어쨌든 재허가와 방송평가 그리고 최근 과거 정통부는

방송 품질평가까지 합니다. 이런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목적에 맞추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SO에 대한

평가내용을 각론적으로 5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에 말씀하신 것과 거의

유사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도 감점제인데 기본점수를 이 제는

없애고 법령위반에 대해 기본점수 없이 감점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한 가지 솔직

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감점을 두려워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 저희는 사업자

로서 준수했을 때 받는 기본점수를 더 원합니다. 감점만 생각하면 위반 자체를

하지 않아야겠지만 위반의 여지가 있을 때 고민의 도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는 기본점수라는 것이 무조건 주는 점수가 아니라 당연히 저희에게

뭔가 역할을 줬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면 기본점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SO 같은 경우 또 자체

제작이 낮고 심의가 약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체제작비율로만 보면 지역

지상과보다 저희가 훨씬 높을 것이고, 지금 방심위에서 심의도 저희 쪽은 확대되고

있고, 또한 정부의 지침에 의해 저희는 SO 단위로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채널심의위원회 운영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라도 그런 것을 잘했을 때 기본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다만 점수가  
과하다면

여기는 반대로 감점을 하자고 하면, 감점의 한도를 지정하려고 한다면 차  
라리 그

한도만큼을 기본점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감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의  
견을

하나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매체 차별을 한다고 하고 SO의 경  
우는

내용과 편성을 줄이고 운영에 대한 비율을 더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의문이 듭니다. 당연히 종편이나 보도PP, 또는 지상파보다  
저희가

내용, 편성에 대한 역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하지만 현재 나오는  
지역

균형 발전이나 저희 지역채널에 대한 의미, 플랫폼 경쟁에서도 저희의 차  
별성이

지역성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역성을 담보하는 지역채널에 대한 평가  
비율이 더

줄어드는 것이 맞을지, 오히려 더 늘리는 것이 위성 대비 저희의 평가에  
차별성을

가져가는 것이 의미는 없을지 이런 고민이 하나 됐었습니다. 다음 재난방  
송에 대해

저희에게 새로운 평가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부분은 찬성이라는 말은 그렇  
지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재난방송을 저희의 평가항목으로 하는  
기준이

근거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저희의 의무는 자막송출입니다. 그러면 단지 자막  
송출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냐, 자막송출의 시간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더 나아  
가서

아까 임석봉 팀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분량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  
다. 퀄리티

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퀄리티를 매번 심사할 수 없을 것이고, 최소한  
재난

방송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포맷이나 정의가 정해져 있어야 최소한 그것  
을 담보한

프로그램의 분량만 가지고 평가하는 식으로 해서 질적인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방송평가가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한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면 적어도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포맷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별

건이지만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재난방송과 관련된 저희의 구체적 의무들이 더

명시된다면 사업자로서 부담은 되지만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 지역성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시 지상파와

생각이 똑같은데 지역성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이제까지 심사에 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제출한 내용과 평가위원회에 서



판단하고 주는 점수가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는 이것은 지역성이라고 해서

냈지만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피드백을 주셔야 저희가 보완

하고 발전할 텐데 그 차이에 대해 아무런 후속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앞서 두 분과

마찬가지로 공유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 하나와 더 나아가서 지역성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저희는 20점

에서 50점으로 늘어나는데 지역성이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초기 SO에 권역을

하던 물리적 경계와 현재 지역방송을 하는 생활 중심의 정서적 경계가 차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지역으로 봐야 할지 이런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광역을 하겠다가 아니라 지역을 더 잘하려면

명확한 규정 또는 그 명확한 규정이 어렵다면 평가의 방식, 이런 지역성 프로

그램을 50점으로 향상하는 것보다는 지역채널에서 저희의 다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침언인데 굳이 저희에게 더 의무를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상파를 보면 '비상업적 공익광고'라는 것이 평가항목

입니다. 저희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정부에서는 저희에게도

당연히 공익광고 협조요청이 들어오고 상당히 열심히 협조합니다. 의무가 아니

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비상업적이지만 공익광고 많이 갈수록

좋고 더 전달되는 것이 좋다면 유료 플랫폼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것도 같이 검토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입니다.

○ 좌장(주정민 전남대 교수)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성원 팀장님도 2개 정도 방송평가 운영에 있어서 개선할

사항을 말씀하셨고,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4가지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적절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 특히 방송평가가 평가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통해 방송사들의 여러 가지 경영이나 또

편성 부분에 대한 질을 높이는 자극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필요하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추가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어서 GS Shop의 채호석 부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채호석 GS Shop 대외협력부장

- GS Shop의 채호석 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홈쇼핑을 대표로 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다른 홈쇼핑사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취합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홈쇼핑 의견을 취합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형태의 방송사업자가

있고 또 동일한 방송사업자 형태 중에서도 각 이해당사자 간 요청사항이 달라서

합리적으로 방송평가 기준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통위에서는 지속적으로 변별력을 높이려고 했고 또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기준 변경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피평가자 입장에서는 거의 2년에 한번 최근에는 많아져서 1년에 거의

조금씩이라도 기준 변경이 있었는데, 하나의 기준 변경으로 인해 피평가자인

방송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 후단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제도

개선안에 폐지하게 될 중소기업 TTA 인증제품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도입했을 때

내부적으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과연 중소기업이라는 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 그다음에 TTA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홈쇼핑

방송기술 쪽에 그러한 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산 수립 등 후단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조금 지나서 정착을 못

하고 폐지되는 것은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변경주기를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한 4년, 5년 이렇게 조금 넓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제안사항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홈쇼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제도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법령 위반에 대한 감점제도입니다.

홈쇼핑 같은 경우 심의규정, 편성규정, 관계법령 등 지금 제도개선안에 보면

총점의 10%로 정했기 때문에 150점 감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16개

항목에 500점을 받는데 아무리 다른 항목들을 열심히 하더라도 3개 항목 150점

감점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송평가가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재승인에 반영되고 승인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라이선스 박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아마 있으

셔서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 10%로 설정안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정착할 때까지 단계를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첫째 시행은 5%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방송사업자가 변경된

기준에 맞게 적용하면 7%, 9%, 10%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홈쇼핑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서서 말씀

드렸지만 역시 가점제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메리트가 없고, 방송사업자가 좀 더 활발하게 공익 목적으로 의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점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2가지가 저희가

느끼기에 변경되는데 첫 번째가 우선순위 2등급의 재난방송 편성이 기존 10점에서

40점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의외인데 방송사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난방송의 의무사업자로서 당연히 재난방송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고, 그래서

홈쇼핑사업자들도 재난 시 방송대응 매뉴얼을 각사별로 마련해서 대응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홈쇼핑 특성상 전체 화면에서 재난 발생 시에 자막스크롤을 내보내고

있는데 전체 화면에 아주 많은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개별 PGM마다

협력사 중소기업과의 계약관계도 있는 사항이고, 또 시청자들의 시청 패턴에도

장기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15분 텀 정도로 해서 재핑 형태로 시청하는 형태

이기 때문에 과연 홈쇼핑방송이 재난방송을 편성하는데 효율적인지는 저희들도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굉장히 배점이 높고 등급도 높게

올라간 것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홈쇼핑사들이 계속 제안했던 것이 소비자

민원에 대한 배점 20점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것이 더 확대가 돼서 배점이 30점

까지 올라갔는데 홈쇼핑마다 규모가 다르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연간 2,000만건

정도 주문을 소화하고 있고, 거기에서 0.001 정도 해서 내부적으로 민원이라고

관리하고 있는데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50건 정도 수준입니다. 연간

2,000만건의 주문을 그리고 1,900 몇 만건을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는데 연간

소비자 민원에 접수되는 50건에 대해 접수가 1건, 2건 많을 때마다 접수를 1점,

2점씩 차감하는 것은 이것이 합리적인 측정기준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2,000만건을 처리하는데 50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또는 어떤 회사는

40건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배점을 23점 정도 차이를 두게 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

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회사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 같은

경우 연간 2,000만건의 주문을 처리하고, 어떤 회사는 연간 1,000만건의 주문을

처리하는데 과연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민원접수하고 그 보상 내역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번에 할 때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 말씀 잘 들었습니다. 4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가 사업자들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 네 분 나오신 분 모두가 감점, 가점 제도에 대해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욱제 박사님이 답변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단체 쪽에서 나오신 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언련의 김세옥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 김세옥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팀장

- 안녕하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김세옥이라고 합니다. 우선

본 토론회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플로어에 시민단체에서 나온 사람은 저 밖에

없습니다. 방송평가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 방송평가 내용이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방송평가를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의외로 점수가 높네'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청자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렇

다면 다른 언론단체들이나 시청자단체들에서 방송평가에 대해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확장해서 들으셨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이 토  
론 구성

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다른 시청자단체들, 언  
론단체

들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  
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민단체 의견을 모두 대표할 수 있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업자

분들께서는 감점제도, 가점제도에 대해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송평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입장 중 하나는 기본점수로 작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에서 쿠션이 되는 쿠션의 역할을 하던 점수들이 그동안은 너무 과했다는 지적

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점수에 대한 부분들도 제거하고 감점의

폭을 마련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

입니다. 다만, 총점의 최대 10%가 과연 적당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고민이 있는 이유는 인증위 오보 결정이나 심의 제재 부분들에 의해 감점이 되는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함께 그리고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문제에서 이렇게 준행정기구처럼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과하게

작용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기구들이 좀 더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을 전제로 한다면 이 감점

항목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

10%가 과연 적당한가, 아까 임석봉 팀장님께서 '240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만큼 받는 사업자는 지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심의나 올바른 인증위의

평가들이 내려진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과연 이런 최대치를 굳이 정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것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 부분은 고민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폭넓은 의견들을 수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변화된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검토하면서 이렇게 배점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세부심사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지금 마련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그동안은 심의  
가 됐을까,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면서 느낀 것들은 과연  
기본

접수로 규정된 부분들이 제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  
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체심의 공정보도위원회 부분에 대한 배점이 굉장  
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방송평가 당시에 세부평가항목들을 봤을 때  
자체심의

같은 경우 자체심의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제작물을 심의하고 그리  
고 제작

진을 그 자체심의하는데 참여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면 세부배점에서 만점을 채길 수

있었습니다. 방통위 심의 사전 지적 비율 항목의 경우도 사전심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전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문제 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있으면 다 인정되었습니다. 올해 기 때문에

2016년 방송평가를 보면 지상파는 25점 만점에서 KBS가 20점, MBC가 23점, SBS가

21점이었고, 종편은 22.5점 만점에서 TV조선이 19.8점, JTBC가 22.5점, 채널A도

22.5점, MBN은 20.7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자체심을 굉장히 잘했고,

그런데 방통위 재승인 심사에서 막상 심의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방통심의에서

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경우 공정성이나 이런 일부 조항

에서 법정제재건수를 4개 이하로 유지하라, 이런 조건까지 붙을 정도로 엉망

이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 방송평가 자체심의 평가 항목에서는 실제 심의

내용이 어떤지, 자체심의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시청자 민원은 이어

지고 방심위의 제재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과 무관한 형식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심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 자체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점만 늘어난다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은 기본

점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들었습니다. 공정보도위원회 같은

경우 이것이 자체심의와 배점이 늘어나 있는데 어떻게 세부적인 부분이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성욱제 박사님의 설명을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같은 경우도 배점이 상향된 항목이었는데,

이것도 실시 여부를 보면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것도 지난번 평가기준으로 봤을 때 실시만 하면 9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가제도 축소 여부는 조사 예산의 규모가 전년도 대비 비교평가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공개 여부도 홈페이지 기준으로 하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사내열람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하면 미공개가 된다,

공개 수준에 따라 차등평가를 한다, 요약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전문을 방통위나

이런 외부기관에 배포하는 경우 공개 열람을 할 수 있게 하면 중간접수를 준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배점이 상승한 항목인 이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로서 이런 것들이 유의미한 기준인가에 대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부

항목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역시도 앞에 자체심의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체프로그램 품질평가 같은 경우 2014년을 비교해 보면 KI

조사에서 MBC는 지상파 3사 4개 채널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만족도

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7개 항목을 평가할 때 신뢰성, 다양성, 유익성, 공정성,

공익성 이런 항목 등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MBC에서 자체적

으로 프로그램 품질평가를 했을 때는 자사 메인뉴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굉장히

KBS 1TV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우리가 괜찮다', '기준 대비 높은 품질

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에서 우리는 괜찮은데 또 밖에서 한 평가와 맞지 않을 경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 저희가 조사를 위해 예산을 더 쓰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체계를 갖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더 채길 수 있다면 이것은 과연 실효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의견 반영도 다

비슷한데 이것도 자체심의회와 마찬가지로 부서를 설치하고 의견반영 제출 여부를

정리해서 제출하고 이런 식의 형식을 갖추면 다 점수를 채길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본점수로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변쯤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제작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평가하는 사업자에서 그동안 제외되어 있던 EBS를 포함시킨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를 활용했다는 것만으로 평가해 주는

것은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표준계약서 활용 부분은 5등급 평가를 하면서 계약건수 비율만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던데, 최근에도 표준계약서 변형이나 왜곡으로 인한 논란에서 작가들이

해고된 사례 등이 존재하고, 방송평가해서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세부

항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외주제작사 제작인력 안전

운영 강화를 위한 평가항목이나 방송사, 외주제작사, 독립창작자 간 상생협의체

등을 여러 가지 평가에 포함해서 반영하겠다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 제작 유통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실행계획 수립과 또

실시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지금의 항목과 유사하게 갈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형식적인 조치로 갈 수 있는 만큼 조금은 가점이 아니라 이 부분도 감점에 대해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평가 안에

있지 않은 내용인데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올해 봄 정도에 '방송계갑질119'와

지금은 발족을 했지만 당시 준비위원회였던 '방송스태프노조'에서는 방송스태프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89.7%에 해당하는 이들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비정규 방송스태프들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로 등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들도 어느 정도 지상파, 종편, 여러

방송사들에 이 부분도 의무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 시청시간대 균형 편성 평가방식 개선에서 보도

분야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 40%로 이 부분을 조정하셨습니다. 아까 성욱 제 박사님

발표하시면서 이런 연구들을 하시면서 처음에 종편이 탄생할 때 우려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종편의 보도

분야 평가대상 같은 경우 주시청시간대가 평가에서는 평일 오후 7시에서 11시,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 오후 6시에서 11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편에서 이런 보도나 시사토크 프로그램들을 주되게 편성하는 시간은

낮시간대입니다. 현실을 외면한다는 지적들이 오래 전부터 존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고려는 이번 개선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을

비율이 40%로 조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좌장(주정민 전남대 교수)

- 김세옥 팀장님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아마 시간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성욱제 박사님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정보도위원회 배점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서는 토론자들 의견 다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계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지요. 성균관대 지성우 교수님 의견부터 들어봅시다. 부탁드립니다.

○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의 지성우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토론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여름에 방송평가위원을 제가 한지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3년 동안 평가를 할 때마다 조금씩 고쳐야겠다는 이야기

들을 에필로그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6번, 8번 고쳤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평가제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평가였다, 평가

제도의 개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지상파, 종편, 또는 홈쇼핑 이런 방송 유형별로 세분화되지 않은 것들을 세분화

하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을 빼고 필요한 것은 삽입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 박사님도 그렇고 방통위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한 개선 방안이

아니겠느냐, 물론 아직까지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난

평가기준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한 평가기준이다, 두 번째 특징으로 보면 사업자

분들 이야기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어서 조금 더 고치면 좋은 평가기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에 대해 물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앞에

말씀들을 꼭 종합해서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언론법 학자로서 전체 평가에

대해 거시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미시적인 이야기

들을 평가에서 꼭 하고 계신데, 제가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평가 왜 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방송평가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대학들은 교육부로부터 대학

평가를 받고 있고 열 몇 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돼서 국가에서 나오는

장학금이나 재정이 다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몇 년

후에는 30여개 대학은 대학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설정한 목표와

방통위가 설정한 목표를 한번 비교해 보면 교육부에 비해 교육부의 절실한 필요성,

인구 감소와 학생 감소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방송평가의 필요성, 그러니까 방송을

지속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그 방송사들이 잘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주 쥔뜰한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민단체나 다른

곳에서는 다른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평가기준들이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식적인 기준들만 맞추면 만점이

나오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 외에 다른 정성 평가항목들을 조금 더 집어넣으면 아마 이 평가기준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까 임 팀장님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저희들 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정성평가를 넣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

는 앞으로 이런 형식적인 기준보다도 실질적인 기준을 생각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하려고 하는 방향이 여기에 조금 반영되어야 하는데

철학적으로 처음부터 이 생각을 하고 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2개 중 하나인데

규제를 강화해서 그것이 방송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많이 지켜야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송 중 재난방송 같은 것, 이것은 좀 더 엄격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상파에는 좀 더 엄격해야겠지요. 라디오 방송을

생각해 보면 라디오방송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짧게 이야기 하거나

아까 흡쇼핑 같은 경우 밑에 흐르는 곳에 재난방송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 흡쇼핑 입장에서는 굉장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매체별로 또 항목

별로 규제가 어느 정도 체감해서 거기에서 당하는지에 관해서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 평가항목에서 아예 제외하든지 아니면 이 평가항목은

조금 과감하게 Pass or Fail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처럼 평가가 끝나고 나면 특히 종편의 경우 잘 아시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난리가 납니다. 대표이사님들이 ‘우리는 몇 등 했어?’ 끝나기도 전에 신경을 쓰시

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점수의 배점이 문제가 아니라 평가하는 기준 그

평가의 목적이 문제라면 필요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Pass or Fail 항목을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예를 들어 4개 종편을

1등부터 4등까지 쪽 해서 점수를 매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몇 개 항목은 Pass

or Fail로 과감하게 전환시켜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시적인 말씀을 드리면 평가제도가 앞으로 이 방송을 이렇게 미시적으로

천착해서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앞으로 방송의 발전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넷플릭스라든가 OTT가 활성화된다든가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볼

수 있다든가 이런 거시적이고 세계적인 글로벌한 방송환경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이 평가를 통해 무엇인가 제재를 하는 목적이 아니고 웬만큼 잘하는 사업자

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 평가 항목

안에서 좀 더 철학적으로 고민해야겠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규제완화와 맞물

려서 평가를 통해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잘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사업자들 계속 말씀하시지만 무엇

인가 본인들이 잘하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에 대해

서는 엑스트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또는 상을 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드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레드팀이 뭐냐 하면 2011년 오사마 빈라덴에 의한 항공기 테러가 생긴 후

CIA에서부터 본격화된 것인데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만

아니라 방통위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사업자들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를 오늘 같은 이런 토론회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시적으로 한 달이어도

좋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학자들이나 사업자들이

그때그때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방통위에서 언제든지 불러서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표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보다 이  
사업자

들의 이야기를 고깝게만 듣지 마시고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가제도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보다는 미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일련의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 평가를 백서로 만들어서  
평가

제도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 번 하고 이런 제도를 조금씩 미시적으로 하  
다 보면

지금과 같은 큰 평가제도의 변화가 없이도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지 않겠  
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좌장(주정민 전남대 교수)

- 말씀 감사합니다. 평가의 배점이나 항목 측면의 의견보다는 전반적으로 평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학계

의견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지요. 인하대 하주용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 하주용 인하대 교수

- 인하대학교의 하주용입니다. 아마 성욱제 박사님이 방송평가 부분에 굉장히 오랫동안

동안 일을 하신 것을 제가 항상 옆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이전 방송위원회 시절은

모르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래로 계속 방송평가 제도에 대한 개정,

조금씩 수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성욱제 박사님이 계속 팔로 우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우연찮게 그 옆에서 잘하고 계시는지 관찰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논란이

있었던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또 저도 다른 이견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동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과장님도 직접 오셔서 의견을

내시기도 하고 또 반박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 고생 끝에 만들어진 안입니다. 아마

이 결과물이 아직 100%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 단계에서 점검해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평가

제도를 다 알거나 아니면 평가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아서 디테일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방송

평가라는 것이 학생들 평가와 굉장히 비슷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는지를

국영수만 가지고 볼 것이냐, 국영수, 예체능까지 다 볼 것이냐, 또는 국영

수 평가를

할 때 배점을 몇 점씩 할 것이냐, 또는 국어시험을 보는데 25문항으로 볼 것이냐,

30문항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 안에는 형식적으로 국영수와

예체능 과목을 넣을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몇 개 항목으로 평가할 것이냐 까지 정말

디테일은 악마였다는데 악마적인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오 늘 나온

것은 굉장히 상위단의 수준에서 발표가 된 것이라 논쟁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마 방송평가 제도를 놓고 이렇게 이견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방송평가

제도가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냐? 선하게 쓰여 있는 방송서비스의 질적 수 준을



제고하겠다, 이런 것 말고 실제로 평가라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상이

합니다. 즉, 어떤 분들은 이 결과가 나오면 '중편사업자가 몇 점인데 지상파

사업자가 몇 점인데', 또 '채널A는 몇 점이고 JTBC는 몇 점인데' 이렇게 비교

목적으로 많이 쓰시는데 제가 보기에 방송평가의 원래 목적은 비교 목적이 아니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 간 비교를 위해 탄생한 제도가 아니고 방송

사업자가 각자 자기에 주어진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질적으로

우수한 방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질적으로 우수한 방송이 되면 다 좋은 방송인

것이지요. 이것이 99점과 98점이 점수 차이가 나니 너는 10등하고 너는 5등하고

이렇게 평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너무 변별력에 그렇게 목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면 모든 사업자가 다 만점을 받는 평가라는 것은

왜 하느냐, 평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변별력의 고유한 속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평가제도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비교목적이 아니더라도 평가에 변별력,

항목이 제대로 좋은 사업자에게 좋은 점수를 주도록 차별화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방송평가가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 좋은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좋은 평가점수를 주는 것인데 아마 좋다, 또는 질적

으로 우수하다는 것이 시대적으로 또는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로

평가제도 개선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만들어진 항목들을

제가 내부적으로 참여하면서 보면 기존 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던 항목 간의 균등성

또는 꼭 이것이 필요한 항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들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시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진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리스트들, 방송통신

위원회가 처음 출범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방송평가제도가 계속 변화를 해왔지만

대부분 전체적인 변혁보다는 해당 시기에 필요한 사항들 하나를 끼워넣고 배점을

조정하고, 또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또 끼워넣고 배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항목인지에 대한 평가가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 문제점

들을 이번에 한꺼번에 검토했다는 부분에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

으로 보면 지상파TV의 경우 경영투명성이 기존 30점에서 15점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경영투명성이 지상파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상파가 어느

정도 그런 수준에 도달했으니 거기에 대한 평가는 평가점수 반영에서 빼겠다는

의미이지, 이것이 지상과 경영투명성에 필요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많이 논했습니다.

기준에 있던 평가항목이 예를 들면 10개라면 어느 것이 중요한지, 교과목이 10개

라면 그중 국영수가 중요하다면 그 국영수를 찾아내는 과정들을 쫓 했는데 아직

이 평가항목의 중요도가 어떤 사업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로 평가등급을

받았고, 어떤 사업자에게는 별로 높지 않은 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각 사업자가 처한 상황 또는 각 사업자군의 발전단계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그런 요소가

다소 주관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군

간에 어느 정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또는 시민단체나 아니면 학계에서 그런

평가 수준, 중요도를 따지는데 동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런 작업들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우려하는 바는 어떤 평가항목은 너무나

사회적으로 명목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아까

시민단체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과 관련된 것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평가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사회가 요구하는 항목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방송평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결국 방송평가는 단순히 방송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현행 방송법은 이것을 재허가·재승인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송평가가 엄밀하지 않으면 개념적으로 그리고 측정 방법상 엄밀하지

않으면 재허가·재승인을 거부당한 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된 방송평가

점수로 인해 내가 사업면허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할 경우에 그것을 충분히 방어

할만한 능력을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방송평가 안에 끄집어 넣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하는 점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즉, 학교에서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영수, 예체능 다 포함하고 집에서 부모님

에게 인사 몇 번 하는지, 효도하는지, 아침인사하는지, 어머님께 전화드리는지

이런 것까지 평가하면 전인적 평가가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것으로

입시제도의 목적을 갖추거나 학교 교육이라는 시스템 안에서의 목적을 갖추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방송평가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단순히 평가해서 '너 몇 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허가·재승인

제도에 활용이 된다면 그만큼 누가 봐도 그 점수를 받았다는 것에 이의제기하지

않을 정도의 합리적인 평가항목, 합리적인 평가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법령이 요구하는 바를 여기에 다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가 이것은 저도 연구반 내부에서 이의를

몇 번 제기했었던 것인데 홈쇼핑PP의 재난방송평가입니다. 겉으로 보면 오늘도

비가 오고 어제도 비가 왔고 때로는 지진도 나서 재난방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

합니다. 그런데 재난방송과 관련된 법규를 제가 봤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재난방송에 대한 조항입니다. 제40조제1항제4호에 보면 재난방송대상사업자는

지상파방송, SO, 위성방송, IPTV로 되어 있고, 전문편성P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괄호 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편·보도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재난방송의 법적 의무는 PP의 경우 보도와 중편PP까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하지 않게 홈쇼핑PP도 재난방송 평가항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재난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홈쇼핑을 많이 보니까 거기에서 재난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중요도로 따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께

인사 몇 번 하는지도 평가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

법적인 의무를 가진 사업자에게 해당 법을 준수하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

그런 취지가 한 파트가 있다면 평가대상이 아닌 그런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게

이것을 억지로 평가하는 요소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외에도 평가 제도를

전반적으로 뜯어보면 장애인 장차법 또는 고용과 관련된 법규 이런 것들의

요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빼면 평가할 항목은 없겠지만 엄밀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다른 법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그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를 받거나 그런 별도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징계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옳지만 몇 명을 고용했기 때문에 몇 점을 주어야 한다는

제도가 과연 방송평가에서 좋은 것인지, 세상에 모든 법규를 방송평가 안에 다

넣는 것은 아닌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 지금

다 빼면 현재 방송평가가 변화하기에는 아주 큰 변화라고 봐서 지금 상황 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가항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평가해야 할

항목들, 꼭 방송사업자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연구반에서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았고, 거기에 일정한 중요도 순위를 잘 매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평가

항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측정방법일 것입니다.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배경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를 하면서 성욱제 박사님이 잘 이것을 발전 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좌장(주정민 전남대 교수)

- 감사합니다. 이번 평가제도 개선의 의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실제 조정과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시민단체, 학계 일곱 분의 의견을 들었고 마지막

으로 방통위 담당 과장입니다. 오광혁 과장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광혁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장

- 안녕하세요. 편성평가정책과장입니다. 역시 제가 제일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대부분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사업자 쪽 말고 교수님이나 시민단체 쪽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많은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도

말씀드리기 전에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운영했지만 총 7번의 회의를 개

최했다고

했는데 사실 너무 짧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논의한 것에

비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15~16년 정도 방송평가가 진행

됐었고 그리고 한 6~7회 정도 평가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새로운 항목이 들어가고 주로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었

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전면 개정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한 비중을 다시 고려하고 매체 간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



했다고 봅니다. 특히 방송평가는 매체별 비교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각 매체에 따른 특성 평가 항목에 맞추어서 그 평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따라서 여기 도입 배경에 나온 것처럼 방송의 공적 책임을 조금 더

부과하고 자기가 받은 평가를 다시 한 번 반성하고 또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나은 방송평가를 받고 질적인 제고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지, 이것 자체가 사업자의 순위를 나타내거나 내지는 매체 간의 비교를 통해

저 매체보다는 내 매체가 훨씬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거나 이런 목적

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비록 사업자 간의 우열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목적

자체가 그것이 아닌 새로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송평가는 재허가에 40%를 반영

하지만 말 그대로 정확하게 40%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송평가와 재허가의 관계성을 보면 방송평가는 심사항목도 그렇고 기준도 그렇고

대부분 계량평가입니다. 즉, 질적인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개개인의 심사위원 내지는 개개인의 평가가 보고서 '질적으로 우수

하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재허가를 하면서 재허가

에서도 계량평가가 있지만 정성적 평가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이

더 많습니다. 방송평가와 함께 계량적 평가를 통한 부분과 함께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재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방송평가는 가급적이면 어떠한 심사위원

이라든지 평가단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량적 평가를 통해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계는

있습니다.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지만 실무자 또는 개선방안을 연구하면서 그 부분의 한계도 있지만 나름

여기 평가에서는 그런 계량적 평가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평가가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시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평가항목도 새롭게 들어가고

비중도 새롭게 해서 전체적인 매체별 특성까지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은 2차, 3차를 거쳐 새로운 세심한 평가기준이나 방법을

다시 또 개선하고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이 평가가 또 다른 규제로서

작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통해 사업자가

새로운 공적책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재허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4%라고 하는 부담은 있겠지만 그것은 역시

60%라고 하는 재허가의 평가 내지는 심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재허가가 이루어

지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방송사업자가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제도개선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

겠습니다.

○ 좌장(주정민 전남대 교수)

- 말씀 감사합니다. 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의견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또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우리가 바라 봐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을 토론을 들었고, 저희가

플로어의 의견을 듣기 전에 여덟 분의 의견에 대해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욱제 박사께서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반영해서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신 몇 가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 성욱제 KISDI 연구위원

- 질문 주신 것들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개선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의 의견과 심지어는 평가위원회 그다음에 전체회의를 통해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 없는 안이라는 것을 일단 아셔야 할 것

같습

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 분 한 분에게 여쭙보면 평가의 목적, 우선순위,

항목 아마 다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안은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그 안에 가미된 안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송평가의 도입 취지는 명확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심사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정해진 굉장히 폐쇄적인

위원회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었고, 그래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그 심사의 과정을 보여 달라는 것이

바로 방송평가의 도입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40%보다 더 높여서

오히려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토의하고 결과를

도출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정성적인 부분들,

굉장히 본인들의 감으로 또는 전문적인 소견이 물론 그 안에 있지만 어떻게 나왔

는지를 평가할 수 없는 그 점수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객관화하는 것들이 방송

평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시는 만큼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점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답변은 아까 민언련의 김세옥 위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같음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점수들이 기본점수가 아주 과하게 부과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점수를 잃으시는

것에 대해 굉장히 사업자 간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빼고 점수를

내는 것들이 오히려 더 진짜 점수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세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것을 제외한 많은

항목들이 기본점수처럼 운영되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기본점수를 없앤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와 피드백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10년을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해서 방통위와 긴밀하게 이야기해서 계속해서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세부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항목을 배점에

대해서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수상실적 논의해서, 그런데 제가 공개를 못 하는 것은 그 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있던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공개되어서 괜한 논란이 될까 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은 당연히 약속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점수에 대한 것도 당연히 공유하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평가규칙 개정주기에 대해 여기에 있는

어느 누가 평가규칙을 자주 개정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개정주기는 당연히 점점 늘리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들 몇 분들이

이야기하신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야 할 것 같은데 가점제도 운영이 해 보니까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점은 대개의 경우 가점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항목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분들은 가점항목인지 이것이

새롭게 신설되는 항목인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정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0%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왜 40%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42%가 굉장히 자의

적인 기준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42%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고 게다가

실효성마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논거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여러분

들의 몫이지만 일단 오락이 최대치를 60%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있을 수 있는 최대치는 40% 아닐까, 그래서 일단 40%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의견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역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

인지에 대해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 딜레마입니다. 지역성이 도대체 어디까지의

지역이 지역인지는 아마 지역을 연구하시는 주정민 교수님도 여러 차례 지역성

지수도 연구하셨지만 끊임없는 숙제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다양한 지 다양성

연구가 수십 년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공정성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연구

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역에 대한 것이 결국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밖에 없어서

현재의 범위는 방송이 나아가고 있는 그 지역의 것들을 이야기해야 지역성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는 그것에 대해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성폭력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앞으로 우리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그것들은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들어 올 수

있으면 당연히 그때는 넣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J헬로에서 이야기하신 PP들도

평가하면 좋겠다는 것은 PP 분들이 판단해야 할 것 같고, 법도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 민원 홈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그

부분들은 딜레마라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방송을 홈페이지에도

해야 하느냐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재난에 대해 알아야 하지 않느냐는 다소 당위

적인 것들 때문에 들어갔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일부는 반대할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찬성해 주셔서 그것들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아주 길어



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아마 여기에 못 모셨다는 것에 대해 제일

최송한 라디오사업자 분들이나 다른 지역사업자 분들의 의견들을...

○ 좌장(주정민 전남대 교수)

- 잠깐만요.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덟 분을 모셨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못 모신 분들,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의견을 주십시오. 또 앞으로 제도

개선 과정에서 각 사업자별 그리고 또 시청자단체 등등 충분히 의견수렴 절차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바쁘신 중에도 오셨으니까 혹시 플로어에서

의견 주실 분들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앞에서 토론자들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피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손 들고 자기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의견

반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 송시혁 아리랑제주FM 차장

-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랑제주FM의 송시혁 차장입니다. 저희는 라디오인테지방으로

되어 있고 영어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뀌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상내역입니다. 수상실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25점에서 45점으로 라디오

쪽이 올라간다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심사도 가 봤고 또 저희가 15년

됐는데 딱 한번 상을 받았었는데 TV 같은 경우 영어라도 화면이 있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라디오는 영어가 딱 나오는 순간

전체적으로 다 멘봉이 됩니다.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까지도 그러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특혜가 아니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영어

방송사가 몇 개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타 같은데 앞에 있는 배점비율을 보면 내용편성과 운영

부분에서 기준 맞춘다고 200점 배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뒤에 보면 150점, 150점

으로 5:5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좌장(주정민 전남대 교수)

-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지요.

○ 권형록 MBC강원영동 차장

- 안녕하십니까? MBC강원영동 권형록 차장이라고 합니다. 미시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역방송과 서울과 방송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베이스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항목 신설 항목에서 상생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저희 MBC강원영동 방송권역에

외주제작사라고 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고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서울업체들이 와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상생협의체 운영을 평가한다면 저희는 실제 한

업체와 상생협의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쓰지도 않는데 평소에 거래

실적이 있다고 다 불러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역방송사 입장에서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UHD 프로그램 편성평가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역민방 같은 경우 올해 다 UHD 전환 작업을

기본적으로 했지만 지역MBC 같은 경우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MBC강원영동 같은 경우 복수연주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강릉연주소는 UHD

송출이 가능하지만 삼척연주소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강릉에서 UHD 송출한 내용이

삼척연주소에서는 HD로밖에 나갈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해

해야 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성 구현 평가프로그램 강화 부분

인데 지금 현재 평가항목에 보면 자체제작 프로그램은 자체제작 공동제작

이 있고

저희 프로그램이 전국방송으로 나갔을 경우에 가중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방송으로 나갈 만한 내용이 주로 보면 어디 출품을 해서 상을 받은  
내용

이거나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주로 전국방송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역성과 벗어나는 내용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가중치를 받기 위해서는 전국방송을 탈 수 있는 내용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성과 거리가 멀어지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  
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고, 추가  
적으로

지역성 구현의 접근방법이 저희가 지난번에 진천에서 방송평가 담당자들 모임이

있을 때 퍼블릭 액세스의 개념으로 다가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배점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솔직히 저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모호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디테일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좌장(주정민 전남대 교수)

-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교신 대구MBC 정책기획실 부장

- 대구MBC 정책기획실의 김교신 부장입니다. 오늘 패널 중에서 지역민방 사업자가

없고 우리 같이 지역MBC나 지역KBS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불만입니다. 왜 그렇게

밖에 패널 구성을 하지 않으셨는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왔으면 아마 '지역성 구현'

이 한마디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올라왔으며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러나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 하나는 최근까지도 방송

평가를 지난주에도 서울MBC에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 지역 MBC가 수중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수중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피드백 받았습니니다. 다시 말해

연좌제, 서울MBC가 방송하고 그것이 나중에 심의에 걸립니다. PPL 협찬 이든 보도,

특히 뉴스 전두환 씨 옹호한 것 때문에 우리가 걸렸는데 그것을 지방에서 서울

MBC의 편성권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했으니 아들도 별 받아라,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아버지가 잘못된 것 때문에 너희도 반 틀  
별

받아라,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도대체 이런 평가가 어디 있느  
냐? 우리가

서울MBC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느냐? 뉴스 내용에 개입할 수 있느냐? 아니  
지 않습

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MBC가 잘못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수중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별점의 반을 받으라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상식적으로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런 부분, 서울MBC와 지방MBC, 서울KBS와 지방KBS, 특히 SBS와 지방민방은 그런

고리가 있는데 그런 고리에 대한 특수성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방송사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다고 지금 이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렸으니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좌장(주정민 전남대 교수)

-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 정규혁 KBC 광주방송

- 저는 KBC 광주방송에서 올라온 정규혁입니다. 아까 앞에서 지역MBC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여러 사업자 쪽은 참석하고 있는데 지역MBC, 지역민방

지역방송사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패널은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방송평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어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JTBC 팀장님이 말씀하신 평가점수 부분에서 소항목별 세부 점수가 공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점수를 만약에 50점 만점에 30점 맞았다, 그러면 전체 30점에

대해 세세한 부분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선하고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나왔고 물길을 틀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구체적인 부분을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어떤 부분에 더 노력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지역민방입니다. 지상파 광고도 계속 빠지고

있지만

특히 지역방송사는 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민방은 더더욱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부분의 매출을 사업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 부분의 방송평가 항목에서 전체 매출을 가지고 직접제작 부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찬이 아니라 사업을 통한 매출인데 방송광고가 아닌 전체 매출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직접제작비 부분에서 항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되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좌장(주정민 전남대 교수)

-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손 드셨는데 두 분 다 듣겠

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오상진 연합뉴스TV

- 연합뉴스TV의 오상진이라 합니다. 보도PP 쪽을 한번 살펴봤더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총점 같은 경우 항목수가 총 17개에서 14개로 줄었는데 일단 50점으로 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점표만 봐도 50점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배분을 한 것이 있다는 인상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일단 신설된 항목을 봤을

때 지상파나 종편 같은 경우 프로그램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프로그램 수 상실적

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보도채널 같은 경우 95% 이상 뉴스 편성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생긴 것이 보도PP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점수가 50점으로 배정되었을 때 과연 이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수에 대한 배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

그전에 기존에 있던 항목에서 기술이나 콘텐츠 투자 같은 경우 뉴스가 투자를 많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방송사들과 상대평가점수가 비교

됐을 때 불리한 점도 있고 그리고 공정거래 같은 경우도 자체제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좌장(주정민 전남대 교수)

-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철 방송채널진흥협회

- 저는 방송채널진흥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이현철이라고 합니다. 일단 일반 PP 관점

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평가 제도개선 관련해서 일반PP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정리해서 주무부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반영

되었는지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단 일반 PP 입장

에서 SO와 위성들이 말 그대로 방송평가의 목적인 사업자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적정한 수신료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시적인 이야기

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수신료 배분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별도로 제출할

때는 이것에 대한 배점 수준이 향상되어야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오늘

배점 조정이 된 것을 보면 SO와 위성에서 보면 15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배점 수준으로 보면 오히려 0점 몇 퍼센트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플랫폼사업자들이 일반PP에게 배분하는 수신료 개념에 보면 단순하게 실시간

채널에 대한 수신료를 배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유료채널과 VOD, 그리고

종편 사용료까지 다 포함된 수신료를 전체 채널 매출액 대비해서 수신료 배분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유료채널이나 VOD 같은 경우 배분

하는 비율이 실시간채널과 배분하는 비율과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VOD나 유료채널 같은 경우 매출액의 60% 정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실시간은 한 15%~25% 수준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종편

부분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실제 구분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그렇긴 한데

종편 같은 경우 일반PP와 같은 PP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플랫폼과의 협상력에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이후로 지금 종편 사용료 같은

경우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통계수치를 보이고 있고 일반PP 같은 경우 4%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상력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평가항목 내에 종편사용료 금액과 일반 실시간 채널 PP 사용료

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묶어서 그것을 수신료 배분액에 같은 항목으로 포함

시킨다는 것은 조금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별도로 구분해서 실제 종편

사용료를 제외하든지, 그래서 실시간 채널에 대한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더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

○ 좌장(주정민 전남대 교수)

- 나중에 서면으로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아까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린

다고 드렸지만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성우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 아까 임성원 팀장님께서 방송법 말씀하시면서 지상파나 종편, 보도, 전문 PP에

관해서까지만 평가하고 일반PP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릅니다.

이쪽은 허가과 승인사항이고, 국가적인 중요도나 방송계에서의 활용도를 봐서

이것은 행정법으로 보면 허가·승인을 해야겠다, 아시다시피 일반PP는 등록제

입니다. 등록의 경우에는 그 PP가 더 중요해져서 이 PP에 관해 승인이나 허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허가·승인 사항으로 규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규제가 지난

수십 년간 계속 PP는 등록제였고 종편이나 이쪽에서는 PP를 평가해서 론칭을 시킬

때 그런 부분에 활용하고 싶겠지만 아시겠지만 아직 국내 PP들의 경우 오히려

저희들이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이고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팀 같습니다. PP가 훨씬 더 글로벌한 경쟁

력이 나오는 그런 PP들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그것은 차후에 방통위에서 고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좌장(주정민 전남대 교수)

- 혹시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 방청객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몇몇 질문에 대해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방송, 외주제작사 협력 실적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답변이 필요한데 성욱제  
박사님이

짧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욱제 KISDI 연구위원

- 일단 지역MBC는 외주제작사 표준계약서 활용항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  
에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타당하신 말씀이어서 나중에 좀 더 검토

하겠습니다.

○ 좌장(주정민 전남대 교수)

- 감사합니다. 표철수 위원님 2시 30분부터 5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지키

셨는데 현재 방송평가위원장 맡고 계셔서 책임감이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분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같이 참여해 주신 지역방송의 입장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평가위원장으로서는 논의에도 참여했지만 오늘 말씀 듣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다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하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재난방송에 관한 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방송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내보내고 있는 방송매체는 기본목표가 공공성·공익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폭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희생되었다, 이런 것이 뉴스로 나오

는데 재난방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된 사안이 재난방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규모가 작은 방송, 예를 들어 물론 지상파이긴 하지만 국악방송도

있습니다. 국악방송, 그다음에 홈쇼핑방송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시청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재난방송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어떤 매체

든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비중 있게 모든

매체에 이번에 개선하면서 적용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반드시 좋은 의견들을 잘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좌장(주정민 전남대 교수)

-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의견수렴 공개토론회를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들께서 오늘 제시한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들 아마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선안을 최종적

으로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주신 가장

많은 말씀이 배점과 평가기준에 대한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아마 같이 고려가 되어서 개선되리

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 결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 평가의 목적이 전체적으로 방송에 대한 품질을 높여서

시청자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의견 주신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제도로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신 표철수 상임위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방송평가 제도를

좀 더 효율적이고 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개정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저자소개

## 성욱제

- 성균관대 불문/신방학과 졸업
- 파리 8대학 정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
- 파리 2대학 정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송민선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언론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

≡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8-37  
방송평가제도의 변별력 제고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연구  
(A Study on Enhancement of Effectiveness and  
Public Interest in Broadcaster's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2018년 12월 일 인쇄

2018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Homepage: [www.kcc.go.kr](http://www.kcc.go.kr)

인쇄 인성문화